

ISSN 2093-5048

2009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nual Report 2009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nual Report 2009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Tel_02.758.0114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09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 n n u a l R e p o r t 2 0 0 9



발 간 사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금융환경 하에서도 국민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를 위기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공사 또한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부실예방을 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정보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위험감축을 유도하는 등 Risk advisor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였고, 부실금융회사의 정리기간을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수지분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목표기금제가 시행되고 차등보험료율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역별 보험료율 체계를 조정하여 금융업계의 보험료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는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 감축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가 예금보험제도와 공사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금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능우

CONTENTS



본문차례

제1장 총 설

10

제2장 조직 및 업무

15

제1절 조직 운영	15
제2절 추진 업무	20
제3절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	28

제3장 기금 관리

42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2
제2절 예금보험기금	59

제4장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및 MOU 관리

67

제1절 리스크 상시감시 체제 구축	67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MOU 관리 등	75

제5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경영관리

80

제1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80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82

제6장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의 관리

83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83
제2절 보유자산의 관리	88

제7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93

제1절 부실책임추궁체계 개선	93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94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97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99
제5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102

제8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103

제1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103
제2절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108
제3절 국제 교류 및 협력	109

제9장 2009년도 결산

111

제1절 결산 개요	111
제2절 결산 기준	111
제3절 결산 현황	118

□ 부 록	129
-------------	-----

CONTENTS

● ● ● 표 차례

〈표Ⅱ-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5
〈표Ⅱ- 2〉 2009년도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16
〈표Ⅱ- 3〉 임 원	18
〈표Ⅱ- 4〉 인원 현황	19
〈표Ⅱ- 5〉 2009년도 주요 회수내역	23
〈표Ⅱ- 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31
〈표Ⅱ- 7〉 휴면예금보험금 수령 실적	32
〈표Ⅱ- 8〉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실적	33
〈표Ⅱ- 9〉 2009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34
〈표Ⅱ-10〉 사회공헌활동 주요 내역	37
〈표Ⅱ-11〉 2009년도 신규 정보화 이행과제	39
〈표Ⅲ- 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43
〈표Ⅲ- 2〉 특별기여금 수입	43
〈표Ⅲ- 3〉 예보채 발행 및 상환	44
〈표Ⅲ- 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45
〈표Ⅲ- 5〉 상환기금 차입금	45
〈표Ⅲ- 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2009년도)	46
〈표Ⅲ- 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누계)	47
〈표Ⅲ- 8〉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47
〈표Ⅲ- 9〉 금융투자사에 대한 자금지원	49
〈표Ⅲ-10〉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50
〈표Ⅲ-1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51
〈표Ⅲ-1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52
〈표Ⅲ-13〉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53
〈표Ⅲ-14〉 신용협동조합에 지급된 보험금	54
〈표Ⅲ-15〉 상환기금의 회수(2009년도)	55
〈표Ⅲ-16〉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55
〈표Ⅲ-17〉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57
〈표Ⅲ-18〉 케이알앤씨의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	58
〈표Ⅲ-19〉 보험료 수입	60
〈표Ⅲ-20〉 금융권별 보험료율	60
〈표Ⅲ-21〉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61

〈표Ⅲ-22〉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2009년도)	62
〈표Ⅲ-23〉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누계)	62
〈표Ⅲ-24〉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63
〈표Ⅲ-25〉 신용협동조합에 지급된 보험금	64
〈표Ⅲ-26〉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09년도)	65
〈표Ⅲ-27〉 예금보험기금의 회수(누계)	65
〈표Ⅲ-28〉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65
〈표Ⅳ- 1〉 부문별 인디케이터 선정 현황	70
〈표Ⅳ- 2〉 청계금융포럼 회원 구성	71
〈표Ⅳ- 3〉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 수정 · 추가 내역	77
〈표Ⅴ- 1〉 2009년 중 부실금융회사 정리내역	81
〈표Ⅵ- 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83
〈표Ⅵ- 2〉 민원상담 내용	85
〈표Ⅵ- 3〉 민원상담 처리 결과	85
〈표Ⅵ- 4〉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88
〈표Ⅵ- 5〉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2009년도)	89
〈표Ⅵ- 6〉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누계)	90
〈표Ⅵ- 7〉 정리금융기관의 자산매각 내역	92
〈표Ⅶ- 1〉 부실금융회사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95
〈표Ⅶ- 2〉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96
〈표Ⅶ- 3〉 부실금융회사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97
〈표Ⅶ- 4〉 부실채무기업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97
〈표Ⅶ- 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98
〈표Ⅶ- 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99
〈표Ⅶ- 7〉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반 · 특별재산조사 현황	100
〈표Ⅶ- 8〉 금융거래정보조회 관련 조사 현황	100
〈표Ⅷ- 1〉 2009년도 주요 조사연구 실적	108
〈표Ⅸ- 1〉 요약 대차대조표(예금보험기금회계 총괄)	122
〈표Ⅸ- 2〉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회계 총괄)	123
〈표Ⅸ- 3〉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총괄)	124
〈표Ⅸ- 4〉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총괄)	125
〈표Ⅸ- 5〉 요약 대차대조표(공사회계)	126
〈표Ⅸ- 6〉 요약 손익계산서(공사회계)	127

CONTENTS

● ● ●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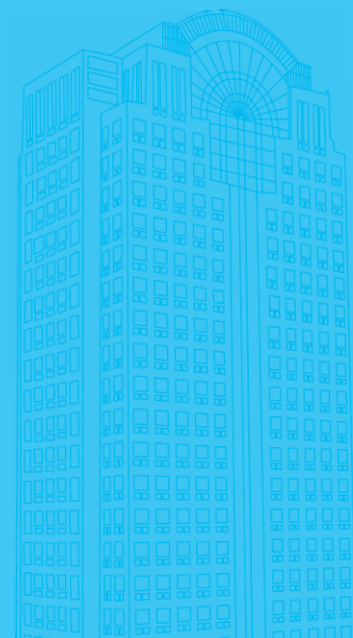
〈그림 II-1〉 조직도	19
〈그림 II-2〉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35
〈그림 II-3〉 중장기 정보화계획 추진체계	38
〈그림 VII-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95



KDIC

차 례

- 제1장 총 설
-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3장 기금 관리
- 제4장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및 MOU 관리
- 제5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경영관리
- 제6장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의 관리
- 제7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 제8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 제9장 2009년도 결산
- 부 록



제1장 총 설

2009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로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0.2% 성장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 급락하는 어려움 속에서 2009년을 시작하였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의 재정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7.2% 확대하고 그 중 65%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였으며,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와 자동차세제지원 등의 내수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p 인하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화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과 생산이 호전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은 연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불안이 완화되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년말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으로 2009년을 마감하였다.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크게 하락한 이후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상승한 끝에 전년말 대비 100bp 상승한 4.41%(국고채 3년)를 기록하였다. 코스피지수는 3월 2일에 연중 최저치(1,018.8)를 기록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과 글로벌 증시 회복,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말보다 49.7% 상승한 1,682.8로 장을 마감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3월초 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전년말 대비 8.2% 절상된 1,164.5원을 기록하였다.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연말에는 2,700억 달러로 전년말보다 688억 달러 증가하였다.

2009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법으로서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9년의 금융권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이 신설된 반면 리만 브라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이 폐쇄되었다. 보험사는 SH&C생명이 BNP파리바어슈어런스와 신한금융지주사 간의 합작을 통해 카디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이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교보AXA손해보험이 AXA손해보험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제일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합병하여 한화손해보험으로 통합되었으며 법률비용보험 전문 보험사인 DAS법률비용보험사가 영업을 개시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회사 등도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인가를 받는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포함되었다. 리만브라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이 폐쇄되었고, ABN AMRO증권은 ABN AMRO 본사가 RBS그룹에 인수되면서 RBS아시아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한맥선물은 한맥투자증권으로, 부은선물은 BS투자증권으로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받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말 영업이 정지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이 신규 설립되었고 전북저축은행은 영업 인가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전체 부보금융회사수는 전년도에 비해 54개 증가한 320개(은행 54개, 금융투자사 115개, 보험사 43개, 종합금융사 2개, 상호저축은행 106개)가 되었다.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은 2009년 말 현재 1,02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증가하였다. 금융권별 부보예금은 은행 633조원, 금융투자사 19조원, 보험회사 293조원, 중금사 2조원, 상호저축은행 7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1.1%, 22.4%, 9.6%, 116.5%, 2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가 2009년 중 5개 부보금융권으로 납부 받은 보험료는 전년 말 대비 974억원 (8.5%) 증가한 1조 2,446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확보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7년 목표기금제 도입을 법제화한 이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율 체계를 개편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온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함으로써 예금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끝에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하였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선 2008년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2009년에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감시모형의 기능을 개선하여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체결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는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중 1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보험사고 대응협의회」를 리스크상시 감시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위한 「상시감시협의회」에 통합하여 보험사고 대응기능을 강화하였다.

공사는 현행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내에서 정리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 불편 최소화 및 부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2009년 이전 영업 정지된 경북·분당·현대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가교금융회사인 예한울저축은행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컨소시엄에 최종 매각하였다. 한편, 자금부족 상태인 예금보험기금 상호 저축은행계정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08년 말 기준 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0년간 감면하였으며, 저축은행업권의 자구노력을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에서 0.35%로 인상하였다.

한편, 공사는 2009년 말까지 517개 부실금융회사에게 총 112.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자주식 매각 등을 통해 총 45.9조원(2009년 2.6조원)을 회수하였다. 2009년에는 7월에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를 상환 받아 1,876억원을, 8월에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를 상환

받아 1,685억원을, 그리고 11월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소수지분 블록세일을 통해 8,660억원을 회수하였다.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파산재단의 조기종결과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469개 파산재단 중 229개 재단이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다.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은 각각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부동산의 경우 10회의 합동공매를 실시하여 총 42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고, 비상장주식은 (주)코스틸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약 254억원을 회수하였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성원건설 주식 160만주를 장중 매각하여 약 114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29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파산재단이 보유한 해외 주식도 전량 매각하여 약 31억원을 회수하였다.

부실관련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부실책임 추구를 통하여 지원된 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총 498개의 부실금융회사 및 832개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 1,443건,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 18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사연구 부분에서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감독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와 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조사하여 국내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조사연구 성과를 「해외예금보험동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공사는 2009년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특히 국제예금보험 기구협회(IADI)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지침위원회 및 연수회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지침보고서 발간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에 러시아 예금보험원과, 12월에는 터키 예금보험기금과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신규체결하는 등 대외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2009년은 선진예금보험기구를 향한 공사의 노력이 구체화된 해였다. 공사는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예금자 보호기능 강화 및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한편,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9년에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 금융성 기금 9개 중 2위를 차지하였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운영

1.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정관 변경, 기금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등 공사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표 II-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09년 12월말 현재)

직	책	성명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이승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세
기획재정부 차관		허경욱
한국은행 부총재		이주열
위촉위원		강형문
위촉위원		이인호
위촉위원		윤창현

〈표 II-2〉 2009년도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7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안
1.21	2009년도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2008년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계정간거래 내역 보고 200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보고
2.11	2008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등 결산안
2.25	-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안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대한생명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보고
3.11	- 보험금지급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09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 현대택배 주식 매각 기본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여건 검토
3.25	- 전북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계정간 거래안 2008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3.30	우리금융지주(주), 3개 자회사 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4.28	2009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 변경안 - 정리금융공사 보유 대출채권 매각방안 - 舊 현투증권의 CBO후순위채권 관련 사후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6.10	-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6.24	-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 수정안 -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차입금 이자감면안 - 계정간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0년도(제8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 정리금융공사 보유 현대택배 주식 매각안 - 정리금융공사 보유 대출채권 매각안 - 롯데손해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일 자	처 리 안 건
7.22	• 제주은행 주식 매각방안 • (제주)으뜸, (전북)한일, (충북)하나로 및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8.20	•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및 계정간 거래안
8.26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9 회계연도 반기결산 보고
9.23	•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안 • (전북)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9.25	• 2008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11.11	•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자금지원 및 계정간 거래안 • 2009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12.23	• 2009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차입안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2010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 미래에셋증권(주) 공동검사 결과 보고

2.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4인 및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 제·개정,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표 II-3〉임 원

(2009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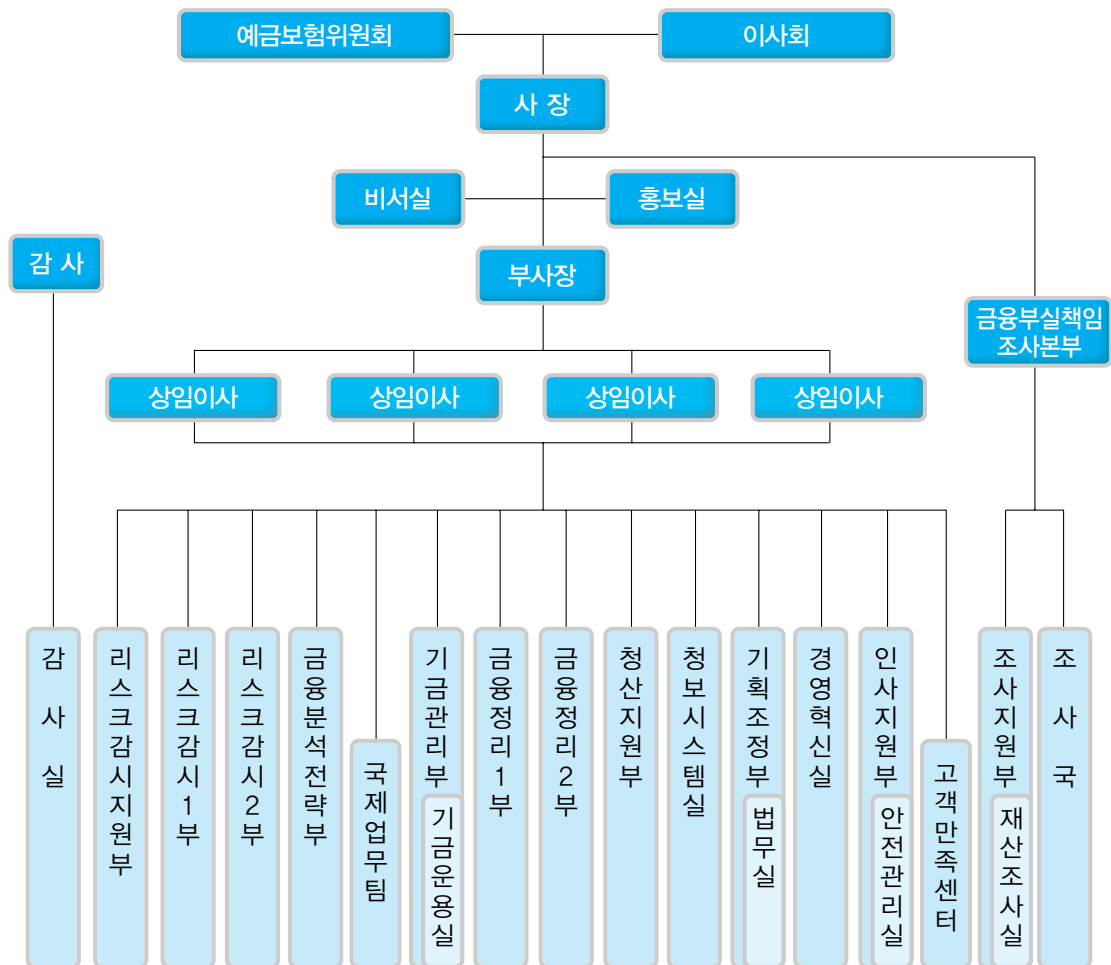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사 장	이 승 우
부 사 장	배 성 환
상 임 이 사	신 동 진
상 임 이 사	조 인 제
상 임 이 사	김 원
상 임 이 사	김 정 태
비상임 이사	함 준 호
비상임 이사	강 대 석
비상임 이사	이 덕 로
비상임 이사	이 재 국
비상임 이사	정 규 영
비상임 이사	최 정 상
비상임 이사	이 영 식
감 사	김 오 연

3. 조 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리스크감시지원부, 리스크감시1부, 리스크감시2부, 금융분석전략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1부, 금융정리2부, 청산지원부, 정보시스템실, 기획조정부, 경영혁신실, 인사지원부, 홍보실, 비서실, 감사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0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 조직도

(2009년 12월말 현재)



* 고객만족센터 및 국제업무팀은 팀급

〈표 II-4〉 인원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인원,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계
인원	14 ¹⁾	406	164	570

주 :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비상임이사 포함(7인)

2) 별정직원은 변호사, 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및 검사인력 등 특정직을 포함

제2절 추진 업무

1. 주요 추진실적

공사는 2005년 3월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사의 기능을 리스크감시, 보험·정리, 회수·조사 및 관리·지원 등 4대 기능으로 구분함으로써 업무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내외 금융·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공사도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설립목적에 비전에 반영함으로써 예금보험기구로서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뜻을 모아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그리고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된 3개년(2010년~2012년)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였다.

가. 리스크 감시

2009년에도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확대하였다. 공사는 2008년 리스크감시모형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동 용역의 결과에 따라 2009년에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리스크감시모형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동안의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공사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체결하였다.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공유대상 정보의 명확화, 공유시기의 구체화, 정보공유의 피드백 장치 마련 및 의견조정기구인 협의회의 기능 강화 등 정보공유 체계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체결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및 위기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총 6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4/4분기부터 2009년도 2/4분기까지의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주의 15건, 개선 3건, 시정 2건, 임원조치요구 11건, 직원조치요구 20건 등 총 51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15개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부보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공동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차별화된 공동검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검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사의 검사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예금보험제도 표시제도 확인대상을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였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의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용 「알기쉬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책자 및 「예금보험제도 포스터」를 개선하여 제작·배포하였으며, 부보금융회사 임직원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관계 표시 실무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이외에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주요 지표, 주요 금융회사의 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DIC 일일동향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 등 공사 외부관계자에게 제공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보험사고 대응협의회」를 리스크상시감시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위한 「상시감시협의회」에 통합함으로써 보험사고 대응기능의 강화와 함께 금융위기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공사 안팎으로 계속되고 있다.

나. 보험 · 정리

공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해외모범사례, 외부기관(KDI) 연구용역 등을 참조하여 현행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부실징후 포착 시 조기에 정리준비에 착수하고, 영업정지 후 신속히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현행 정리절차 내에서 정리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 불편 최소화 및 부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였다. 한편, 전북저축은행(2008.12월 영업정지), 으뜸저축은행(2009.8월 영업정지)은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2개월) 중에 정리준비를 최대한 완료함으로써 기존 4~10개월 소요되던 정리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하여 예금자의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9년 이전 영업정지된 경북 · 분당 · 현대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이들 부실저축은행의 일부 우량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설립된 한시적 가교금융회사(Bridge-Bank)인 예한울저축은행을 2009년 9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컨소시엄에 최종 매각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가교금융회사 활용 정리방식을 통해 보험금 지급 후 청 · 파산 방식 대비 약 947억원의 정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금부족 상태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 의뢰 등을 통해 계정간거래 이자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건의하였으며,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 말 기준 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0년간 감면하였으며, 저축은행업권의 자구노력을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0.3%에서 0.35%로 인상하였다.

다. 회수 · 조사

공사는 1997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중에는 출자금융회사 지분매각, 배당금 수령 및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1.3조원 이상을 회수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2009.11.24)을 통해 소수지분 7%를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하는 한편 8,660억원을 회수하였고, 2009년 7월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876억원, 2009년 8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68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I-5〉 2009년도 주요 회수내역(출자금융회사 지분매각 등)

우리금융	2009.11월, 소수지분(7%) 블록세일로 8,660억원 회수
서울보증보험	2009.7월, FY2008 당기순이익(2,501억원)의 75%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876억원 회수
신한금융지주	2009.8월, 상환우선주 상환금 1,685억원 회수 2009.3월,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으로 131억원 회수
케이알앤씨 (舊 정리금융공사) 보유주식	- 현대택배(비상장) : 2009.6월 보유주식 251만주 매각으로 185억원 회수 - SK네트웍스, 동양메이저 등 상장 8개 종목 매각으로 207억원 회수

한편, 공사는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하여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총 469개 파산재단 중 229개 재단은 법적 종결되었고, 현재까지 파산배당을 통하여 약 18.3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한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원된 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총 498개의 부실금융회사 및 832개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라. 관리·지원

공사는 팀장급 전직원에 대하여 「쌍방향희망보직제도」를 실시하여, 과거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팀장 보임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평가급 차등폭을 확대하고 종합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현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 기능은 최소화 하는 등 선진예금보험기구로의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다.

2.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가. 차등보험료율제도

공사는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차등 보험료율제도 도입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6년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7년 5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동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9년 2월에 개정 및 공포되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 실시 근거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5년 이내 시행을 의무화 하였고,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규정 및 차등보험료율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보험료율의 차등폭은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가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차등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다.

예금자보호법령 개정으로 시행시기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사는 금융권 및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차등평가모형을 확정하는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나. 목표기금제 및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공사는 동 기금의 자생력 확보와 부보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용역과 정책심포지엄 개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다.

2006년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7년 5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 10월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계정을 분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은 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인하, 면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자보호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에서는 퇴직연금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법령상 비보호 금전에 해당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한 근로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이에 공사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자보호를 추진해 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2006.11월),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안 공청회(2007.5월) 및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예금보험제도개선TF 협의(2009.2월) 등을 바탕으로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퇴직연금 예금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편입하였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으로 현행 예금보호 대상상품(은행예금,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에 한한다. 보호한도는 근로자 1인당 부보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치된 부보금융 회사에 다른 부보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3.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추진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손실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2007년 4월 공사에 설치된 「보험사고대응협의회」 산하에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대책 마련 TF팀을 구성하여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해소와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07년 5월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한국 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 합동 TF팀에도 참여하였다.

2008년 4월 저축은행계정 누적손실 해소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한 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금융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의견조율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말 기준 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0년간 감면하였으며, 저축은행업권의 자구노력을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0.3%에서 0.3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계정은 매년 약 7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수납받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누적손실 증가를 억제하고, 적자해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대외평가

가. 정부산하기관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공사는 2009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들을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기관평가단과 기관장평가단으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받았다.

2009년 6월에 발표된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평가 'B' 등급, 기관장평가 '보통' 수준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 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및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09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금융성 기금 9개 중 2위를 차지하였다.

제3절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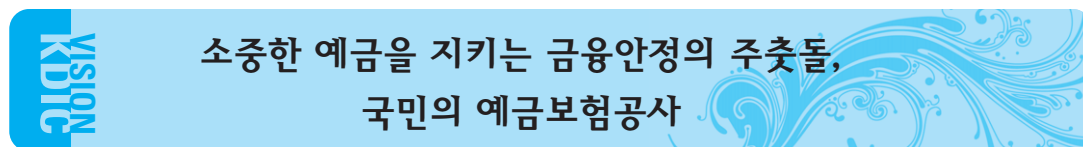
공사는 2005년 3월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 리스크 상시감시 및 적기정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을 처음으로 설정하여 예금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상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및 극복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금융안전망 체계 개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예금보험기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의 설립목적을 비전 및 경영이념에 반영하고자 임직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전과 경영이념을 수립하였다.

나.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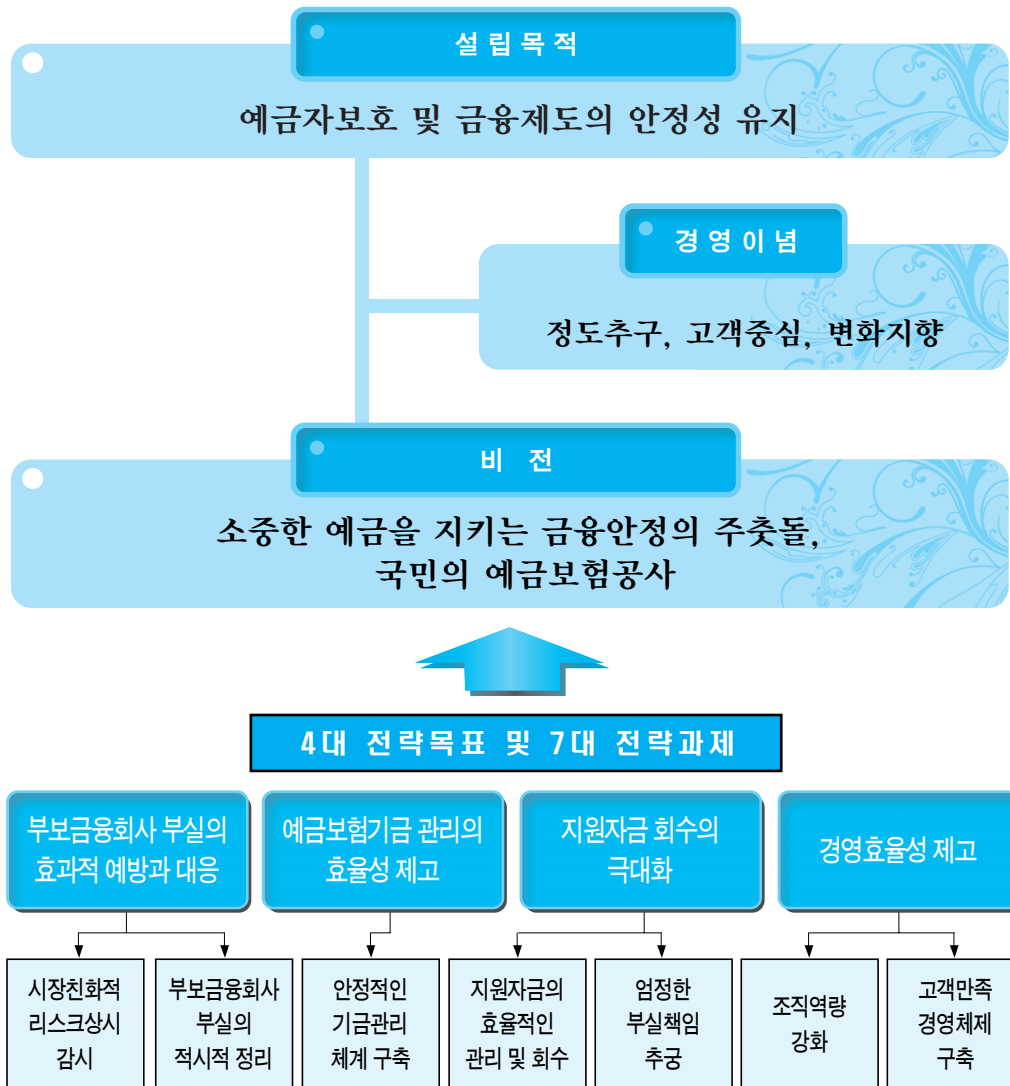
(1) 비 전



(2) 비전 정의

비전문구	구 분	내 용
소중한 예금	사업 대상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의 금융상품(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등”)
지키는	사업 양식	• 예금보험이라는 공적 보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이를 법적·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행사
금융안정	달성목표	• 예금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주춧돌	역할 설정	•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예금보험제도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존립 기반	• 공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사업이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존립 기반이 국민임을 명확히 함

(3)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공사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4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공사의 핵심사업을 7대 전략과제로 수립하였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단계를 3개 년도별(2010~2012년)로 구체화하였다.

〈표 II-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전략 목표	전략 과제	2010년 세부 추진계획
I.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상시감시	-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감사 및 정보공유 활성화 - 리스크감시모형의 안정적 운영 - 시장참여자 수요에 맞는 리스크 정보 제공
	부보금융회사 부실의 적시적인 정리	- 부실저축은행 발생시 신속·효율적 정리 - 부실저축은행 정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 부실금융회사 정리매뉴얼 보완 및 구체화
II. 예금보험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기금관리 체계 구축	- 저축은행 계정 손실 감축 등 기금건전성 제고 추진 -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한 자금조달 방안(Contingency Plan) 마련·추진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수납관리 강화 - 예금보험기금 운용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운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준비
III.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 공사 보유주식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 파산절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파산재단 조기종결 추진 - 출자금금융회사 MOU의 철저한 관리 및 개선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부실관련자 국내 재산조사 지속 실시 - 부실관련자 해외 재산조사 지속 실시 - 해외 재산조사 대상국 확대방안 마련 - 조사 관련 업무역량 강화
IV. 경영효율성	제고 조직역량강화	- 핵심업무 중심의 조직 운영 - 공사 경비예산의 12% 절감 - 인력관리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연수제도 운영 -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 IT지원을 통한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법무역량 강화를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 국제업무 역량 강화 및 기여도 제고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피드백 강화 - 유관기관 및 일반인 대상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연수 활성화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파산재단 관련 고객보호 강화

2. 고객 만족 경영

가. 휴면예금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공사는 예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 완성 이전에 예금자들이 휴면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휴면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 개설, 개별 우편안내문 발송, 신문광고, 직통 안내전화 개설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 개별 우편안내문 발송대상자 및 발송횟수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5만 7천여 명의 예금자가 197억 원의 예금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 II-7〉 휴면예금보험금 수령 실적

(단위 : 명, 억원)

2006년 4월~12월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389	71	31,794	87	6,119	28	2,519	11	56,821	197

나. 파산재단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

공사는 전국 파산금융회사 전직 임직원의 경력확인서 및 파산금융회사 채무자의 부채증명원 발급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파산금융회사 경력 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동안 파산금융회사의 전직 임직원이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자는 원거리에 소재한 해당 파산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파산금융회사 경력 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시스템」 서비스를 신설하여 파산금융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나 부채 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I-8〉 경력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발급 실적

(2009년 12월말 현재)

구 분	경력확인서 ¹⁾	경력증명서 ²⁾	부채증명원 ³⁾	합 계
건 수	75	296	339	710

주 1) 경력확인서 : 법적종결 파산재단 임직원에 대한 경력확인서(2005.12.27 서비스 시행)

2) 경력증명서 : 파산진행 및 사실상종결 파산재단 임직원에 대한 경력확인서(2007.4.30 서비스 시행)

3) 부채증명원 :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대출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원(2006.2.28 서비스 시행)

다.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보유 자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배당재원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소재 불명인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하여 '미수령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동 운동 전개 후부터 2009년 말까지 공사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파산채권자 총 52만 명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새로 파악된 주소지에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주소 보정작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주소 보정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다. 상반기 88개 파산재단 95,901명, 하반기 78개 파산재단 100,026명, 합계 195,927명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에 「미수령 배당금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자가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직접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09년 중 4,090명이 「미수령 배당금 안내 시스템」에 접속하여 배당금 유무를 확인하였다.

공사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2005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814억원(312,190건)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배당금을 파산채권자에

게 지급하였다. 2009년도에는 주소 보정작업 실시 확대 효과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배당금 195억원(91,061건)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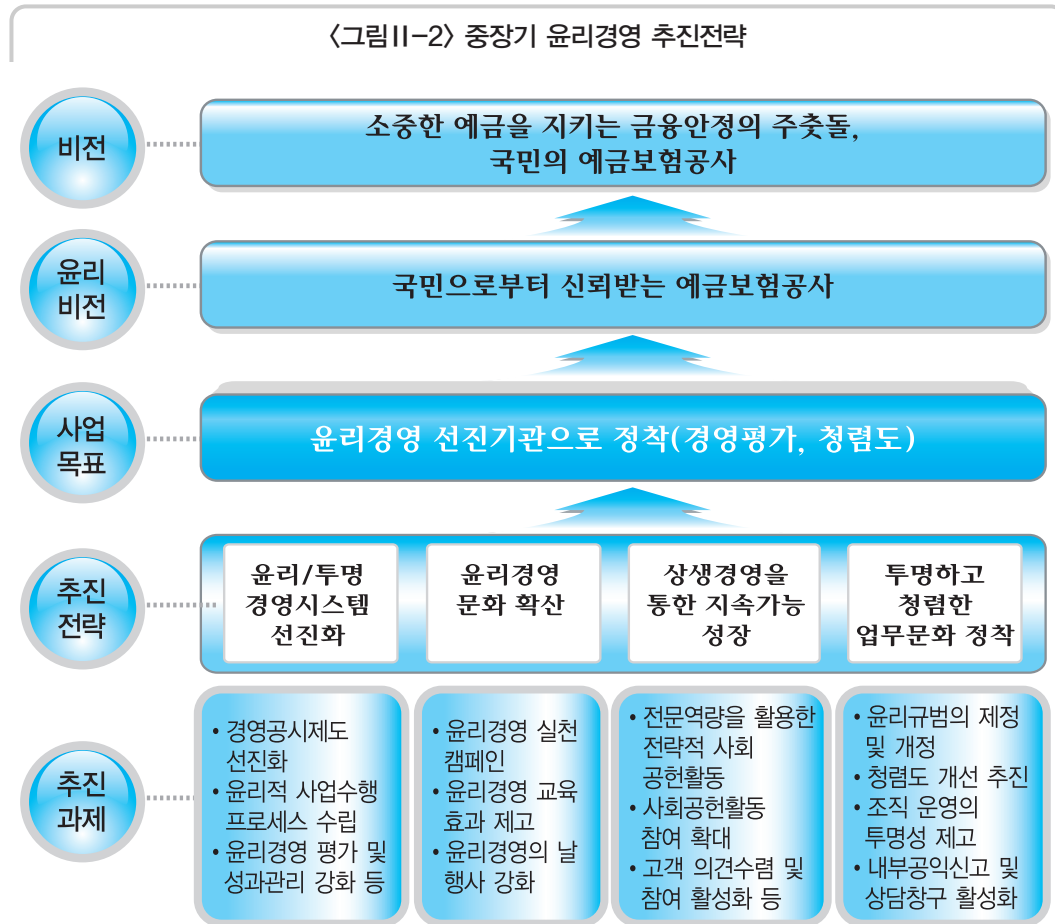
〈표 II-9〉 2009년도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총 금	금 고	신 험
2009년 지급 실적	금액 (건수)	1 (1)	0.04 (255)	0.2 (1,160)	5 (723)	189 (88,650)	0.2 (272)
2005.8~ 2009.12	금액 (건수)	97 (118)	4 (1,753)	1 (2,421)	329 (12,582)	1,381 (294,338)	2 (978)
							계
							195 (91,061)
							1,814 (312,190)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가. 윤리경영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09년에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4대 추진전략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공사는 그 동안 마련한 윤리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스템 선진화, 임직원 윤리경영 의식 제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한 업무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윤리경영 자가점검·윤리교육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UN이 주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공사는 2007년 8월 가입) 이행상황 보고 및 지식경제부 주관 윤리경영 실태조사(KoBEX) 참여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윤리적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나. 사회공헌활동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자원봉사조직인 「예보사랑나눔미」의 봉사단원이 156명으로 증가하였고, 임직원의 기부금(1구좌 5,000원) 및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해 「예보사랑나눔기금」 1억4천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예보꿈나무장학기금」 24백만원을 조성하였다.

2009년 주요활동으로는 2005년 11월 이후 1사1촌운동으로 결연을 맺어온 농촌마을 주민들을 농한기에 공사로 초청하여 공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사 직원들이 결연마을을 방문하여 사과열매 숙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모색하였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16개 팀을 편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1부서1가정(또는 시설)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매일 셋째주 화요일에는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함으로써 1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8월에는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5회 예보꿈나무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으며, 공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장애우학교인 정진학교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매일 세 번째 토요수업의 보조교사 및 과학의 날 행사의 보조교사로 참여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구매물품을 중증장애인마을에 기부하였고, 12월에는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운동, 대도시 속 휴식 및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는 청계천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말연시 후원활동 등 임직원의 따뜻한 사랑 나눔을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II-10〉 사회공헌활동 주요 내역

구분	활동명	수혜대상 /관련단체	내 용	합 계		후원금 (천원)
				횟수	참여 인원	
실 천 운 동	1부서1가정 돕기	어린이재단 등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138	368	20,275
	특수학교 지원	서울정진학교	결연학교의 봄 학교 행사 및 토요수업 보조교사 참여	9	86	304
	1사1촌운동	예산군 운곡리 등	결연마을 일손돕기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진	2	12	4,753
	무료급식	나눔의 등지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급식비 지원 및 봉사	14	87	7,400
	사랑의 집고치기	해비타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활동	3	25	6,000
	청계천 환경정화	청계천관리팀	청계천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10	88	489
	사랑의 헌혈	대한적십자사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1	36	-
	사랑의 동전모으기	월드비전	국내외 저소득가정 및 아동 후원활동	2	81	1,152
	개별/그룹 활동		그룹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77	99	-
기 부 운 동	예보꿈나무 장학금	저소득청소년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1	6	10,000
	국군장병 위문	국가보훈처	국군장병의 노고를 위문금 전달	1		3,500
	불우이웃돕기	중구청	저소득가정 생활개선 지원 (행복더하기 사업)	1	3	500
		사단법인 H2O	가정의 달, 국회가 후원하는 어린이 동심한마당 후원	1		2,991
		나눔과 기쁨	차상위계층의 사랑의 반찬 나눔운동 후원	1		5,000
		서울농아인협회	농아인과 청각장애인 자녀의 장학금 지원	1		1,000
		성모노인복지센터	치매노인 요양센터의 월동장비 구입 지원	1		1,620
		한사랑마을	예비사회적기업의 구매물품을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 후원	1		3,000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 기금마련 운동에 참여	1		450
		국제육수수재단	지구촌 빈곤아동 돕기 운동에 참여	1		5,000
		경희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1		1,000
		대한노인회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설비 지원	1		1,000
		한빛종합사회 복지관	저소득층 생활개선을 위해서 쌀나누기 행사에 참여	1		2,00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2010나눔 캠페인 참여	2		20,000
		경기도광역자활 지원센터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1		5,000
	합 계			272	891	1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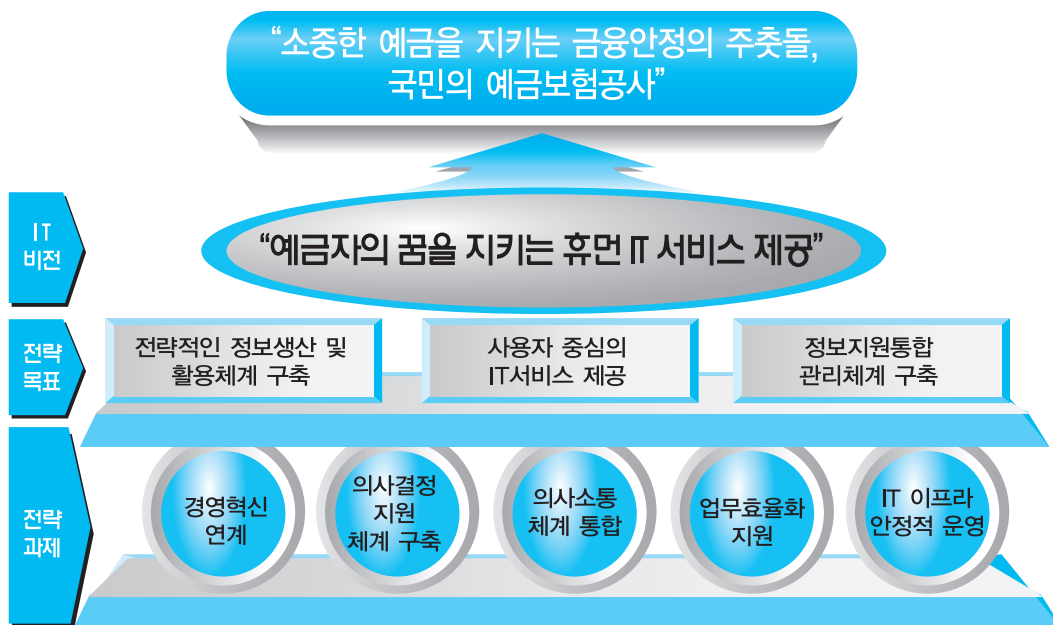
4. 비전달성을 위한 정보화

가. 정보화 계획 추진

공사는 비전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업무와 IT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정보화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총 3개년에 걸쳐 정보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본 계획상 2단계에 해당하는 「정보활용 안정화」를 목표로 통합 IT관리체계 구축, 기금운용시스템 기능개선 등 업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IT서비스 품질향상과 공사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였다. 고성능 통합서버 도입, 침입방지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등 IT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IT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통합리스크감시모형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2008년도에 착수한 업무시스템 신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정화 하였다.

〈그림 II-3〉 중장기 정보화계획 추진체계



〈표 II-11〉 2009년도 신규 정보화 이행과제

정보화 방향	정보화 이행과제
I. 업무효율화 지원	• 통합리스크감시모형 구축
	• 기금운용시스템 기능개선(2010년 상반기 완료예정)
II. 의사소통체계 통합	• 홈페이지 개편
	• 민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IT서비스운영관리시스템(2010년 상반기 완료예정)
	• IT자산관리시스템(2010년 상반기 완료예정)
	• 프로젝트관리시스템(2010년 상반기 완료예정)
III. IT인프라 안정적 운영	• 웹메일 · 웹하드시스템 구축
	• 하드웨어플랫폼 최적화
	• 보안체계 고도화

나. 사용자 중심의 선진 IT 관리체계 구축

공사는 IT서비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IT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였다. 통합IT관리체계 구축은 IT서비스운영관리시스템, 프로젝트관리시스템, IT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EA), IT투자성과평가체계와 함께 공사 IT 관리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먼저, IT서비스운영관리시스템은 그간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관리대상 정보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IT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IT 업무프로세스를 ISO/IEC 20000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자동화하는 것으로 사용자 중심의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은 정보화 사업에 국제표준의 프로젝트관리체계와 공사 자체의 검증 · 반복적 개발방법론인 Themis 방법론을 적용하여 착수부터 종료까지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수행기반을 마련하여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T자산관리시스템은 서버, 소프트웨어, 업무시스템 등 IT자산에 대한 도입 · 배포 · 유지보수 · 폐기의 생명주기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구현을 통해 IT자산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한다.

5.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임직원간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9년 입사한 신입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서배치 후 6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총 21회의 「임원과의 대화(탕데이)」와 총 70회의 「부서장과의 대화(호프데이)」를 실시하였다. 또한, 매년 승격자 또는 승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박 3일간의 관리능력개발연수 일정 중 경영진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구성원 간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임직원 체력증진 및 화합을 위하여 춘·추계 체육대회를 부서별로 실시하였고, 부서장급(7월), 팀장급(8월) 및 4·5급 직원 등(12월)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직급별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공사가 신나는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연중 운영 중인 혁신체험연수 프로그램에 4개팀, 총 15명이 참여하였고, 1월에는 「어린이 KDIC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직원 자녀들을 초청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기극복 연수의 일환으로 체중감량 및 생활 속 올바른 자세 갖기 테마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자기극복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예금보험기능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공사는 200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리스크감시 및 정리 부서를 개편하는 등 예금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회수·조사 부서 개편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 조직·인력은 슬림화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8년 중 12%의 조직을 축소함에 이어 2009년 중 유일한 지방조직인 영남지사를 추가로 폐지하였고,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폐지하고 조직·인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형태의 정리금융기관(케이알앤씨)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의 공정성 제고

공사는 2005년부터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를 도입·운영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부서단위 BSC 평가를 실시한 이래, 2007년 평가단위를 팀 단위까지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BSC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과관리세칙」을 제정하여 BSC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 단위 BSC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단위 성과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제3장 기금 관리

+++++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에서는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진행 중인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상환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바,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09년에 6개 부보금융권 및 신탁계정에서 총 8,656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 III-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특별기여금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

〈표 III-2〉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¹⁾	합 계
			생 보	손 보				
2003	4,775	156	889	185	20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1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합 계	35,557	1,130	8,155	1,792	62	2,689	598	49,986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 52조 3,064억원을 수령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정부출연금 수납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이후로는 정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600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예보채 발행금액은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잔액 80조 9,745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는 정부의 상환대책에 의거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상환기금채 발행,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 III-3〉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50	-	435,000
2000	89,407	-	524,407
2001	310,593	14,640	820,360
2002	36,600	47,215	809,745
2003	-	97,371	712,374
2004	-	166,228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3	113,933
2008	-	113,933	-
합 계	871,600	871,600	-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9년도에 5조 8,600억원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였다.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3년채가 2조 9,700억원, 5년채가 2조 8,900억원으로 모두 고정금리채권이다. 한편, 2009년 중 만기도래한 상환기금채 6조 5,0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09년 말 발행잔액은 27조 3,200억원이다.

〈표 III-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합 계	341,905	68,705	273,2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금지급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더불어 재정 차입금 전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거 2003년 1월 1일자로 그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신규 차입 실적이 없으며, 2009년에 IBRD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09년 말 차입금 잔액은 4,672억원이다.

〈표 III-5〉 상환기금 차입금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액				상 환 액	잔 액
	금융회사 차입	차 관 ¹⁾	재정차입	합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78,579	4,672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 원

가. 개 관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보험금 지급, 출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상환 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로 인정된 금융회사의 정리비용을 부담한다.

상환기금은 2009년 한 해 동안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총 1,073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내역은 출연 38억원(3.5%), 보험금지급 및 자산매입 1,035억원(96.5%) 등이다.

〈표 III-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2009년도)				
(단위 : 억원)				
금 용 권	출 연	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합 계
은 행	1	-	-	1
금융투자	16	-	1,161	1,177
보 험	20	-	-	20
종 금	-	△126	-	△126
저축은행	-	0.4	-	-
신 협	-	0.4	-	-
합 계	38	△126	1,161	1,073

주 : 1) 가지급금 환급분 등

2009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2조 4,831억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48조 9,158억원(43.5%),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5,932억원(16.5%),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30조 3,125억원 (27.0%), 그리고 자산매입·대출로 14조 6,616억원(13.0%)이 지원되었다.

〈표 III-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누계)¹⁾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093	-	100,064	-	461,196
금융투자	80,769	4,060	113	21,239	-	106,181
보 험	159,198	31,191	-	3,495	-	193,884
종 금	27,052	7,431	182,718	-	12,917	230,118
저축은행	101	4,157	72,892	-	8,532	85,683
신 협	-	-	47,402	-	367	47,769
합 계	489,158	185,932	303,125	124,799	21,817	1,124,831

주 : 1) 구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인수한 지원자금 1,6조원 포함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공사는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매각일 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매각계약서를 1999년 12월 23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9년 중 제일은행 소송관련 손실 등에 대한 사후손실보전을 위해 0.8억원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표 III-8〉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자산 매입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제 일	50,248	-	-	-	-	11,383 ¹⁾	4	42	2	0.8	79,476	-	-	-	-
우 리	60,286	-	-	-	-	18,772	-	-	-	-	-	-	-	-	-
서 울	46,809	-	-	-	-	2,216	-	-	-	-	-	-	-	-	-
조 흥	27,179	-	-	-	-	-	-	-	-	-	-	-	-	-	-
평 화	4,930	-	-	-	-	3,386	-	-	-	-	-	-	-	-	-
경 남	2,590	-	-	-	-	938	-	-	-	-	-	-	-	-	-
광 주	1,704	-	-	-	-	2,714	-	-	-	-	-	-	-	-	-
제 주	531	-	-	-	-	1,651	-	-	-	-	-	-	-	-	-

기 관	출 자					출 연					자산 매입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국 민	2,000	-	-	-	-	18,319	-	-	-	-	179	-	-	-	-
주 택	2,965	-	-	-	-	18,075	-	-	-	-	538	-	-	-	-
신 한	2,925	-	-	-	-	25,204	-	-	-	-	591	-	-	-	-
하 나	4,728	-	-	-	-	11,161	-	-	-	-	54	-	-	-	-
한 미	2,600	-	-	-	-	24,356	-	-	-	-	226	-	-	-	-
산 은	-	-	-	-	-	-	-	-	-	-	13,000	-	-	-	-
기 은	-	-	-	-	-	-	-	-	-	-	6,000	-	-	-	-
농 협	962	-	-	-	-	870	-	-	-	-	-	-	-	-	-
수협신용 사업부문	11,581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케이알 앤씨	1	-	-	-	-	-	-	-	-	-	-	-	-	-	-
합 계	222,039	-	-	-	-	139,045	4	42	2	0.8	100,064	-	-	-	-

주 : 1) 매각 후 정산에 따른 자산매입대금 정산분 4,079억원 반영

(2) 금융투자사

공사는 2005년도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 매각 이후 주식매매계약서상 사후손실보전 조항에 따라 과거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관련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9년 중 한투증권에 15.4억원, 대투증권에 0.2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였다.

또한, 공사는 푸르덴셜투자증권(舊 현투증권) 매각 이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매각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등 사후손실 보전을 위해 2009년도에 0.8억원을 푸르덴셜투자증권에 출연하고, 현투증권이 설립한 SPC의 상환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1,161억원 상당의 CBO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였다.

〈표 III-9〉 금융투자사에 대한 자금지원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보험금지급 ¹⁾	
	2009이전	2009	2009이전	2009	2009이전	2009	2009이전	2009
장 은	-	-	-	-	-	-	40	-
동방페레그린	-	-	-	-	-	-	100	-
한남투자	-	-	-	-	-	-	1	-
한국산업	-	-	-	-	-	-	3	-
한 투	38,649	-	768	15.4	4,830	-	-	-
대 투	23,003	-	629	0.2	6,539	-	-	-
푸르덴셜	19,116	-	2,645	0.8	8,709	1,161	-	-
합 계	80,769	-	4,043	16.4	20,078	1,161	144	-

주 : 1) 지급소요금액 기준

(3) 보험회사

2009년 중 공사는 보험사에 20억원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국민·한덕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기간 내에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008년 미래에셋생명(舊 SK생명)이 승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이 지출한 소송비용 18억원을 2009년 4월 출연하였다. 또한, KB생명은 한일생명으로부터 이전받은 지급준비금 중 2006년 5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휴면보험금을 출연약정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기반환(2006.6.26) 하였으며, KB생명은 2006.5.31~2009.3.31 기간 중 고객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휴면 보험금 지급을 공사에 요청하여 2.3억원을 출연하였다.

〈표 III-10〉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자 산 매 입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2005이전	2006	2007	2008	2009
서울보증보험	102,500	-	-	-	-	-	-	-	-	-	-	-	-	-	-
대한생명	35,500	-	-	-	-	-	-	-	-	-	-	-	-	-	-
대한생명 (현대생명인수)	-	-	-	-	-	7,716	-	-	-	-	48	-	-	-	-
대한생명 (삼신생명인수)	-	-	-	-	-	1,518	-	-	-	-	-	-	-	-	-
대한시멘트 (대한화재인수)	0.5	-	-	-	-	509	-	-	-	-	-	-	-	-	-
근화제약 (그린화재인수)	0.5	-	-	-	-	739	-	-	-	-	-	-	-	-	-
금호생명 (동아생명인수)	10,922	-	-	-	-	754	-	-	-	-	2,711	-	-	-	-
SK생명 (국민생명인수)	2,862	-	-	-	-	298	-	-	-	-	168	-	-	-	-
동양생명 (태평양생명인수)	2,597	-	-	-	-	451	-	-	-	-	289	-	-	-	-
SK생명 (한덕생명인수)	3,350	-	-	-	-	387	-	-	-	18	279	-	-	-	-
현대생명 (조선생명인수)	1,166	-	-	-	-	111	-	-	-	-	-	-	-	-	-
대한생명 (두원생명인수)	300	-	-	-	-	2,967	-	-	-	-	-	-	-	-	-
삼성생명 (국제생명인수)	-	-	-	-	-	4,351	-	-	-	-	-	-	-	-	-
교보생명 (BYC생명인수)	-	-	-	-	-	2,411	-	-	-	-	-	-	-	-	-
흥국생명 (태양생명인수)	-	-	-	-	-	2,792	-	-	-	-	-	-	-	-	-
제일생명 (고려생명인수)	-	-	-	-	-	2,087	-	-	-	-	-	-	-	-	-
리젠트	-	-	-	-	-	225	16	-	-	-	-	-	-	-	-
화재	-	-	-	-	-	1,526	5	-	-	-	-	-	-	-	-
인수	-	-	-	-	-	437	9	-	-	-	-	-	-	-	-
	-	-	-	-	-	193	4	-	-	-	-	-	-	-	-
	-	-	-	-	-	5	5	-	-	-	-	-	-	-	-
녹십자생명 (대신생명인수)	-	-	-	-	-	1,393	-	-	-	-	-	-	-	-	-
KB생명 (한일생명인수)	-	-	-	-	-	262	-	-	-	2	-	-	-	-	-
합 계	159,198	-	-	-	-	31,132	39	-	-	20	3,495	-	-	-	-

(4) 종합금융회사

2009년 중 공사가 종합금융회사에 출자 혹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으나, 한국중금의 예금자인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공사가 일부패소하여 예금보험금 0.5억원을 지급하였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공사는 2007년 2심에서 일부패소한 후 127억원을 가지급하였으나,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결과 예금보험금은 0.5억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2009년 기 지급된 가지급금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였다.

〈표 III-1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대 출	
	2008이전	2009	2008이전	2009	2008이전	2009	2008이전	2009
경 남	-	-	-	-	5,652	-	-	-
경 일	-	-	-	-	2,990	-	-	-
고 려	-	-	-	-	4,706	-	-	-
금 호	-	-	-	-	-	-	375	-
나 라	-	-	-	-	27,779	-	-	-
대 구	-	-	-	-	6,725	-	502	-
대 한	-	-	-	-	25,903	-	-	-
동 양	-	-	-	-	-	-	1,200	-
삼 삼	-	-	-	-	8,145	-	-	-
삼 양	-	-	-	-	3,194	-	250	-
새 한	-	-	-	-	7,889	-	4,238	-
신세계	-	-	-	-	7,520	-	-	-
신 한	-	-	-	-	22,242	-	-	-
쌍 용	-	-	-	-	6,662	-	-	-
영 남	1,717	-	-	-	1	-	370	-
울 산	-	-	-	-	-	-	200	-
제 일	-	-	-	-	16,529	-	1,118	-
중 앙	0.5	-	-	-	-	-	-	-
청 솔	121	-	-	-	1,477	-	1,275	-
하나로	24,912	-	7,431	-	-	-	-	-
한 국	0.5	-	-	-	127	△126.5	914	-
한 길	-	-	-	-	6,547	-	1,139	-
한 솔	-	-	-	-	9,220	-	-	-
한 스	0.5	-	-	-	-	-	300	-
한아름	300	-	-	-	-	-	-	-
한 외	-	-	-	-	-	-	531	-
한 화	-	-	-	-	14,343	-	-	-
항 도	-	-	-	-	5,194	-	-	-
현 대	-	-	-	-	-	-	505	-
합 계	27,052	-	7,431	-	182,845	△126.5	12,917	-

(5) 상호저축은행

2009년 중 공사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 III-1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08이전	2009	2008이전	2009	2008이전	2009
신 충 북	100	-	-	-	161	-
기 산	-	-	-	-	541	-
동 화	-	-	-	-	639	-
일 신	-	-	-	-	155	-
동 아	-	-	-	-	104	-
경 북	-	-	-	-	170	-
새 누리	-	-	13	-	413	-
대 원	-	-	-	-	563	-
충 일	-	-	-	-	89	-
대 전	-	-	-	-	102	-
해 동	-	-	-	-	263	-
충 남	-	-	-	-	45	-
부 산 2	-	-	-	-	271	-
유 니 온	-	-	39	-	518	-
아 름	-	-	-	-	615	-
한국투자(동원)	-	-	63	-	783	-
엠에스(조일)	-	-	29	-	738	-
도 민	-	-	28	-	709	-
경 기	-	-	254	-	1,654	-
부 민	-	-	243	-	-	-
한 마음	-	-	521	-	-	-
경 북	-	-	81	-	-	-
신라(텔슨)	-	-	775	-	-	-
하 나 로	-	-	422	-	-	-
솔 로 몬	-	-	663	-	-	-
제 이 원	-	-	325	-	-	-
상 업	-	-	701	-	-	-
케이알앤씨	1 ¹⁾	-	-	-	-	-
합 계	101	-	4,157	-	8,532	-

주 : 1) 2001년 12월말 정리금융공사로 합병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출자

한편, 지급보류보험금의 보류사유 해소에 따른 추가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기 투입 보험금 환입으로 2009년도의 경우 총 0.4억원을 지급하였다.

〈표 III-13〉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구 분	기관수 ¹⁾	지급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0.4
합 계	-	72,892

주 : 1) 상환기금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70개임

(6)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부칙에 의거 부보금융회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보류보험금의 보류사유 해소에 따라 추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기 투입 보험금을 환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009년도의 경우 이를 감안하면 총 0.4억원을 지급하였다.

〈표 III-14〉 신용협동조합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구 분	기관수 ¹⁾	지급금액
1998	39	4,306
1999	95	8,302
2000	122	3,991
2001	127	3,892
2002	235	16,060
2003	248	10,951
2004	173	61
2005	195	16
2006	196	△1
2007	77	3
2008	19	178
2009	1	0.4
합 계	-	47,402

주 : 1) 상환기금의 신탁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327개임

3. 회 수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된 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폐쇄된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금융회사에 대출한 자금은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09년에 2조 6,00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총 45조 8,80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II-15〉 상환기금의 회수(2009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²⁾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0,405	16	379	2,620	-	13,420
금융투자	-	257	9	4,319	-	4,585
보 험	1,876	17	20	320	-	2,234
종 금	251	-	4,157	-	10	4,418
저축은행	-	4	1,002	-	73	1,079
신 협	-	-	266	-	-	266
합 계	12,532	295	5,833	7,259	84	26,002

주 : 1)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표 III-16〉 상환기금의 회수(누계)¹⁾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²⁾	자산매각 ³⁾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44,507	687	17,964	55,178	-	218,335
금융투자	12,121	3,207	74	12,539	-	27,943
보 험	25,924	884	4,114	2,197	-	33,119
종 금	998	59	79,347	-	10,462	90,867
저축은행	-	334	48,164	-	6,122	54,620
신 협	-	4	33,565	-	355	33,924
합 계	183,549	5,176	183,227	69,914	16,939	458,806

주 : 1) 구 신용관리기금 등의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액 1,3조원 포함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3)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09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금 회수 등으로 총 1조 656억원을 회수하였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9년 11월 지분 7%를 블록세일 방식

으로 매각하여 8,660억원을 회수하였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지분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회복 등 매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한 결과 지분 7%의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2009년 3월 신한금융지주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으로 131억원, 2009년 8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68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을 통해 179억원을 회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유주식 매각 노력을 기울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계획안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2008.6.11)하고, 동 계획에 따라 2009년도 귀속분 1,876억원을 회수(2009.7월)하였다.

(3) 기타

공사는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현대택배 비상장주식 251만주를 2009년 6월 25일 현대유엔아이-현대증권 컨소시엄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185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2009년 6~12월 중에는 상장주식 8개 종목을 장중매각 방식으로 매각하여 207억원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공사는 2009년 중 공개경쟁입찰·장중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총 445억원을 회수하였다.

*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인 정리금융공사로 설립(1999.12.27) 후 한아름종금·금고를 흡수 통합하였으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008.8.26)에 따라 정리금융공사는 기관 폐지 후 현재 케이알앤씨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음.

다. 파산배당

2009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파산재단으로부터 408억원, 종금, 저축은행 및 신협 파산재단으로부터 5,425억원 등 총 5,833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09년 말까지 총 18조 3,227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II-17〉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융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09년	1999년~2009년 총회수액
은 행	5	379	17,964
보 험	10	20	4,114
증 권	4	9	74
종 금	22	4,157	79,347
저축은행	75	1,002	48,163
신 협	325	266	33,565
합 계	441	5,833	183,227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라. 자산매각

케이알앤씨는 인수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하여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 Joint Venture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해외 교환사채 발행 및 SAMDA*(Standard Asset Management & Disposition Agreement) 방식에 의한 외화채권 회수 등 다양한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총 6.9조원을 공사에 상환하였다.

* SAMDA(표준자산관리처분계약)는 미국의 RTC(정리신탁공사)가 민간회수전문회사에 부실자산의 관리 및 매각을 위임하기 위하여 도입한 부실채권 정리방식으로 채권의 관리, 원리금수납 뿐만 아니라 매각처분 권한까지 위임하는 계약

〈표 III-18〉 케이알앤씨의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¹⁾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대상자산	매각방법	매각액	매수자
주식(일은증권)	M&A	1,1952)	리젠트그룹
주식(기아자동차)	장외매각	1,158	Fiduciary OGF(L), Ltd.
주식(한국담배인삼공사)	자사주매입	1,681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신동방)	M&A	3	CJ컨소시엄
대출채권 및 주식(신호유화)	M&A	153	아람파이낸셜
주식(신호제지)	M&A	20	아람컨소시엄
주식(하이닉스)	시간외 대량매매	890	국내외 투자자
주식(대우건설)	M&A	1,668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주식(한국전력)	교환사채 주식교환	633)	해외투자자
주식(두산인프라코어)	시간외 대량매매	1,459	-
주식(동해펄프)	장중매각	16	국내외 투자자
주식(S&T중공업)	장중매각	34	국내외 투자자
주식(SK네트웍스)	장중매각	145	국내외 투자자
대출채권	J.V.SPC	2,044	Lone Star
	국제입찰(RFC2001-1)	2,690	Lone Star/Merrill Lynch
	국제입찰(진로채권)	104	Morgan Stanley
	자산관리공사 매각	7,014	한국자산관리공사
	ABS발행	572	국내 투자자
	국내투자자	6	나우B캐피탈
부동산	공매위탁 등	3,830	국내 일반투자자
외화채권	SAMDA	429	해외 투자자
대출채권/유가증권	원리금회수, 시장매각	43,856	-
케이알앤씨	69,030	-	

주 : 1)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의 자산만 집계

2) 배당금 102억원 포함

3) 한국전력 교환사채 주식교환분 기준

마. 대출금 회수 등

공사가 2009년 말까지 공적자금으로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등에 대출한 자금은 총 2조 1,817억원이다. 이 중 2009년에 새누리저축은행 만기대출금 회수 등으로 84억원을 회수하였

으며, 2009년 말까지 파산배당을 통하지 않고 대출금을 직접 회수한 금액은 총 1조 6,939억원이다.

또한, 공사는 2009년 중에 한국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으로부터 16억원, 한투·대투·현투증권으로부터 257억원, 동아생명으로부터 17억원을 출연금 정산으로 회수하였고,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4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295억원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출연금 정산 등의 방법으로 2009년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5,176억원이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가. 보험료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의 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른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는 2009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1조 2,446억원의 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 III-19〉 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험	합 계
			생 보	손 보				
인수액 ¹⁾	-	-	1,414	379	848	2,017	402	5,060
1997	321	-	-	-	-	-	-	321
1998	1,292	-	386	143	132	390	-	2,343
1999	1,975	51	1,011	249	336	377	162	4,161
2000	2,630	156	1,402	379	233	323	281	5,404
2001	4,139	218	1,938	478	139	529	407	7,848
2002 ²⁾	4,361	262	2,295	485	130	604	641	8,778
2003	4,775	312	2,580	535	73	667	603	9,545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4	9,513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합 계	49,435	2,775	32,014	7,279	2,017	12,316	2,500	108,336

주 : 1) 1998년 4월 기금 통합시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인수액

2) 2002년까지의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포괄 인계

〈표 III-20〉 금융권별 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¹⁾	8/10,000	15/10,000 ²⁾	15/10,000 ³⁾	15/10,000	35/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주 : 1) 2009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율 변경

2) 2007년부터 금융투자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보험료율 30% 인하

3)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 · 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표준비율의 5%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

나.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상환대책에 따른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출연금은 현행 예금보험 기금에 귀속되며 공사는 2009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66억원의 출연금을 수납하였다.

〈표 III-21〉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생 보	손 보				
인수액 ¹⁾	-	-	-	-	24,000	7,998	2,871	34,869
1998	-	-	-	-	-	200	9	209
1999	300	1,050	-	30	-	715	3	2,098
2000	60	32,814	-	32	-	-	-	32,906
2001	126	759	30	260	1,500	-	-	2,675
2002 ²⁾	125	500	-	330	-	390	-	1,345
2003	30	-	650	200	-	-	-	880
2004	340	200	600	200	-	-	-	1,340
2005	220	200	-	-	-	1,250	-	1,670
2006	380	800	-	200	-	1,340	-	2,720
2007	-	-	-	-	-	-	-	-
2008	160	11,005	-	-	-	556	-	11,721
2009	766	4,312	419	342	17	777	-	6,633
합 계	2,507	51,640	1,699	1,594	25,517	13,226	2,883	99,066

주 : 1) 1998년 4월 기금 통합 시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인수액

2)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포괄 인계

다. 외부차입금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험금지급 및 부실 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2003년 1,046억원, 2004년 618억원 등을 각각 차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이 중 신협계정의 외부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 425억원, 2005년 385억원, 2006년 60억원, 2008년 50억원 등을 각각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되어 현재 외부차입금 잔액이 없으며,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외부차입금 잔액이 없다.

2. 지 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인정된 금융회사의 정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 상호저축은행계정은 상호저축은행 구조 조정에 5,810억원을 지원하였고, 신탁계정은 기 지원한 정리자금 중 8억원을 환입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은 2009년 말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상호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3조 5,336억원을 지원하였고, 월평신탁 등 14개 신탁에 대하여 2,175억원을 지원하여 보험금 지급 등으로 총 3조 7,51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II-22〉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2009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저축은행	141	3,314	1,774	-	581	5,810
신탁	-	-	△8	-	-	△8
합 계	141	3,314	1,766	-	581	5,802

〈표 III-23〉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누계)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대 출	합 계
저축은행	866	19,095	11,412	3,963	35,336
신탁	-	-	2,175	-	2,175
합 계	866	19,095	13,587	3,963	37,511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상호저축은행

공사는 2008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전북상호저축은행과 2009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우량 자산 및 예금 등을 공사가 2009년 설립한 가교금융회사인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로 계약이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순자산부족액 824억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순자산부족액 2,490억원을 출연하고 총 14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에 대하여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인수대금 152억원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에 따른 인수대금 429억원을 대출하였다.

공사는 2009년 중 영업정지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보험금 1,445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03년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급보류보험금의 보류사유 해소 및 보험금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기 투입 보험금을 환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감안한 2009년 중 순보험금지급액은 1,774억원이다.

〈표 III-24〉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연 도	기관수 ¹⁾	지급금액
2003	1	764
2004	3	1,770
2005	7	4,527
2006	7	326
2007	6	1,345
2008	11	906
2009	9	1,774
합 계	-	11,412

주 : 1) 예보기금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13개임

(2)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부칙에 의거 부보금융회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보류보험금의 보류사유 해소 에 따라 보험금을 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기 투입한 보험금을 환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009년도의 경우 이를 감안하면 총 8억원을 환입하였다.

〈표 III-25〉 신용협동조합에 지급된 보험금		
(단위 : 개, 억원)		
연 도	기관수 ¹⁾	지급금액
2003	8	1,543
2004	12	645
2005	8	12
2006	12	0
2007	5	△3
2008	7	△13
2009	6	△8
합 계	-	2,176

주 : 1) 예보기금의 신탁에 대한 보험금지급 기관수는 14개임

3. 회 수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 배당으로 회수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해준 자금을 상환 받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9년에 1,593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7,39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II-26〉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09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저축은행	592	2	474	471	1,539
신 협	-	-	54	-	54
합 계	592	2	528	471	1,593

〈표 III-27〉 예금보험기금의 회수(누계)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저축은행	2,515	145	1,571	1,941	6,172
신 협	-	-	1,218	-	1,218
합 계	2,515	145	2,789	1,941	7,390

나. 보유주식 매각 등

공사는 2007년도에 설립한 가교금융회사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2009년 9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컨소시엄에 전량 매각하였다. 예한울상호저축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회수금액은 592억원이다.

다. 파산배당

2009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474억원, 신탁 파산재단으로부터 54억원 등 총 52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누계실적으로 총 2,78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II-28〉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용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09년 1월~12월	2004년 이후 총회수액
저축은행	14	474	1,571
신 협	14	54	1,218
합 계	28	528	2,789

라.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03년 이후 경북저축은행 등 12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케이알앤씨(舊 정리 금융공사)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출한 3,963억원 중, 2009년에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71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여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1,941억원을 회수하였다.



제4장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및 MOU 관리

제1절 리스크 상시감시 체제 구축

1. 리스크 상시감시 기반 확충

가. 리스크감시모형의 개선

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리스크감시모형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해 왔다.

은행, 보험권역의 경우 재무정보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모형(RE), 향후 일정시점 이후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리스크 예측모형(RF)과 리스크 수준과 추세를 분석하는 리스크지수모형(RI)을 운영해 왔다. 투자금융권역의 경우 리스크평가모형(RE)과 리스크예측모형(RF)을, 저축은행권역의 경우 상기 3개 모형과 함께 수신변동감시시스템(GMS : Growth Monitoring System)을 추가로 개발하여 리스크상시 감시 업무에 활용해 왔다.

아울러 공사는 기존 리스크감시모형 개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형의 예측력 제고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는 리스크감시모형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상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리스크감시모형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용역을 통해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감시모형에 활용되는 통계 분석기법을 정비하였고,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의 변수값과 임계치 등을 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한 리스크감시가 가능하도록 이상치 적출 등의 분석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미개발 모형인 투자금융권역 리스크지수모형(RI)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모형결과를 웹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웹조회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감시모형시스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리스크감시 인력들의 모형 접근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업무의 효율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부보금융회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2001년 3월 7일 「금융정보공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1월 20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융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유관기관 간 협조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동안의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 15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개정 체결된 양해각서에서는 공유 대상 정보의 명확화, 공유시기의 구체화, 정보공유의 피드백 장치 마련 및 의견조정기구인 협의회 기능 강화 등 공유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양해각서에 당사자로 참여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및 위기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유하는 금융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대외보고서 및 외환보고서 25건이 추가 공유되어 공유실적이 전년도 9건에서 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도 추가로 공유받게 되어 금감원 업무보고서 입수율이 전년도 대비 1.3%p 상승한 96.3%를 기록하였다.

2. 리스크감시 업무 활성화

가. 리스크감시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보험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스크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데스크 운영을 통해 개별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상시감시하고 있으며, 상시감시 결과를 「KDIC 금융현장정보」 등 분석보고서의 작성·배포, 경영진 면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공사의 리스크평가모형 평가에 따라 선별된 금융회사의 경영진을 방문하여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면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감축활동을 유도하였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상시감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동 협의회를 보험사고 대응협의회와 통합함으로써 사전적 리스크예방 및 보험사고 대응기능의 강화를 위한 부서간 유기적 협조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징후 포착 후 정리까지의 동태적 위험관리를 통해 금융위기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감시하기 위하여, 공사는 업권별 혹은 부보금융회사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데스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데스크 등을 통하여 각 금융권역별 또는 개별 금융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인디케이터(Risk Indicator)를 발굴하고,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감염경로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금융현장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다른 금융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수신변동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리스크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정상화 진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고 있다.

〈표 IV-1〉 부문별 인디케이터 선정 현황

(단위 : 개)

부 문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 국제금융시장	실물시장	은행업	보험업	투자금융
인디케이터	2	2	5	4	6	4	5

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의 대응체제 지속 운영

공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감시, 정리 및 회수 관련 부서의 팀장급 실무자로 구성된 「글로벌 신용위기 점검반」을 2008년에 이어 지속 운영하였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주요 지표, 주요 금융회사의 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DIC 일일동향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정책 당국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감시의 결과, 2009년에만 690건의 상시감시 보고서를 생산하여 이중 267건을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 및 학계, 언론, 공사 유관 인사, 부보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시장친화형 리스크 감시

공사는 고객지향적인 리스크분석보고서의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조언자(Risk Ad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리스크분석보고서의 제공 대상을 기존의 정부, 학계, 공사 비상임이사 등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진 및 리스크 관련부서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공 정보 내용도 미시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장 주요이슈 분석, 해외 사례조사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아울러,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생산되는 비슷한 성격의 보고서의 디자인과 양식을 통일하여 「KDIC 금융현장정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공사 리스크감시업무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KDIC 금융현장정보 중 ‘은행지주사 사채발행 증가에 따른 재무현황 분석(2009.2.9)’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중레버리지비율*관리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 자료를 수취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경영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2009.9.30)'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을 계량지표로 도입하여 상시감시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자회사출자액(장부가)/자기자본(장부가)

이외에도 공사는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8년 중 전문가 네트워크인 「청계금융포럼」을 투자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구축한데 이어, 2009년에는 은행 및 보험(생보) 권역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금융권 간담회,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시장 정보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청계금융포럼」 정기모임에서는 국내은행의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방안, 한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여 시장참여자간 정보 공유 및 친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규제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업무 활성화 어려움이 규제 당국에 전달되었고, 향후 시장친화적인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IV-2〉 청계금융포럼 회원 구성

	은행	생보	투자금융
회원 구성	국내은행 13인 외국계은행 3인 연구기관 2인 법무법인 1인 회계법인 1인 신용평가사 1인	국내생보사 4인 외국계 생보사 1인 보험계리컨설팅 1인 연구기관 2인 협회 1인	국내증권사 7인 자산운용사 1인 외국계 IB 4인 연구기관 2인 법무법인 4인
인원수	21인	9인	18인

특히,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9년 중 2개 저축은행중앙회 지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7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방문(13개)과 경영진 면담(4개)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3개 저축은행(2003년 이후 총 64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말에는 리스크분석보고서 수신자를 대상으로 정보 유용성 및 개선방향 등을 묻는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에도 수신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환경 변화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리스크감시정보 보고서를 생산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스크 감시정보를 금융시장에 적기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9년 중 다수의 분석 자료를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생산·배포하였으며, 「금융안정연구」와 「금융리스크리뷰」 발간 및 부보금융회사 경영지표 및 예금동향 통계 등을 생산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시한 바 있다.

라. 표시제도 현장확인 강화

「예금자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여부 등 예금보험 관련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시 금융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예금자와의 접점인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406개 점포에 대하여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표시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여부 확인대상을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현장확인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정보의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이 부보금융상품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 배부용 리플렛으로 「알기쉬운 예금자 보호제도」 안내 책자를 다시 제작하여 2009년 7월 중 부보금융회사의 17,000여개 영업점에 배포하였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예금자 등의 인식제고를 위해 2009년 12월 「예금보험제도 포스터」를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부보금융회사 임직원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2009년 11월 「예금보험관계 표시 실무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2009년 중 신규로 인가받은 47개 자산운용회사, 3개 선물회사, 1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표시제도 안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신설 부보금융회사의 표시제도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유도하였다.

3.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감시업무의 일환으로 상시감시 및 리스크평가모형을 통한 리스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낮거나 특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신규 개발 및 개선된 리스크평가모형을 통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공동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공동검사대상을 선정 하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참여하고, 해당기관의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경영진에게 촉구하였다.

공동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9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부보금융회사등의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2003.9월) 및 「부보금융회사등의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04.4월)을 제정하였다. 2006년에는 동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리스크요인이 다양화 되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공동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새로 수립하였으며, 필요시 수시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5월에는 「부보금융회사등의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공사의 상시감시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예금자보호법」 및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1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2001년 이후 62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공사의 수시 공동검사 실시 요청 시 수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2009년 1월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공동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차별화된 공동검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검사담당자를 초빙하여 공동검사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공사의 검사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리스크감시 인력의 전문성 제고

공사는 2008년 3월 직제 개편 시 공사 총 인원의 약 12.7%(75명)에 해당하는 인력을 리스크감시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석·박사 및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CFA, FRM 등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리스크 분석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2009년 1월 직제 개편시 공사는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리스크감시2부의 팀을 기존의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1개 팀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감시 관련 부서의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13.7%(93명)를 차지하는 등 리스크감시 업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공사는 직원의 리스크 상시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간부직원과 리스크감시 인력 대상 상시감시교실 개최, 전담데스크 및 리스크담당제 운영,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 개최, 부서별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 경영정보시스템(FIAS) 등 모형 개선에 따른 사용자별 맞춤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분석보고서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보고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보고서를 발굴, 시상하고 전 직원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 경쟁을 통하여 경영분석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은행 업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과 사례 및 공동검사 현장에서의

대응요령 등이 설명된 「저축은행업무해설서」와 은행업무 및 은행 회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은행업무 보고서」, 「은행회계해설」 등 각종 부서업무지침서를 발간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분석 및 조사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공사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09년 7월 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전문가의 대상에 공사에서 1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 등 리스크감시에 있어 공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MOU 관리 등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기관 포함)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됨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총 6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를 관리하고 있다.

2008년도 4/4분기부터 2009년도 2/4분기까지의 MOU 이행실적 점검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관주의 15건, 개선 3건, 시정 2건, 임원조치요구 11건, 직원조치요구 20건 등 총 51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재무부문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은 대규모 CDO/CDS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2008년도 4/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등 3개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는 목표미달에 책임있는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부과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부동산 PF 대출 등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로 ROA 등 2개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의 감소 등으로 2008년도 3/4분기 및 4/4분기 MOU 재무목표 중 운용자산이익률 등 2개 목표를 연속 미달성하였다.

비재무부문과 관련하여, 2008년도 4/4분기 MOU 점검결과 우리은행의 외화차입시 CDS 거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 조치 및 리스크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MOU 취지를 위반한 시간외수당 추가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조치 및 인건비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광주은행의 2008년도 3/4분기 MOU 조치요구사항 처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 공사의 조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경남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직원 조치와 철저한 운영리스크 통제 및 관리 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하였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법인세 상호정산을 위한 회계 조정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 관련 개선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2009년도 1/4분기 MOU 점검결과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의 부동산 PF 불합리한 취급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및 양수약정 처리대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자산 건전성 분류 부적정에 대하여 관련 직원 조치 및 향후 관련 업무 적정처리 및 사후관리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직원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의 변경 건에 대하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2009년도 2/4분기 MOU 점검결과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확대여신 심사위원회의 부실한 여신 심사에 대하여 관련 임원에 대한 조치 및 실질적인 심의·의결 및 운영리스크 통제 방안을 요구하는 등 MOU 체결 금융회사의 이행부진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표 IV-3〉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수정·추가 내역

(2009년 12월말 현재)

금 용 회 사	MOU 체결	MOU 재체결	MOU 수정	MOU 추가	MOU 해지	비 고
우리금융지주	2001. 7. 2		2004. 9.22 2007.12.26	2003. 1.22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01.3.27 출범
우 리	1999. 1.22 ¹⁾	2000.12.30	2004. 9.22 2007.12.26	2003. 1.22 2005. 3.23 2007. 3.28 2009. 3.30		舊 한빛은행
광 주	2000.12.30		2004. 9.22 2007.12.26	2003. 1.22 2005. 3.23 2007. 3.28 2009. 3.30		
경 남	2000.12.30		2004. 9.22 2007.12.26	2003. 1.22 2005. 3.23 2007. 3.28 2009. 3.30		
제 주	2000.12.30				2002. 4.29	신한지주앞 지분 매각
서 울	2000.12.30		2001. 6.29		2002.12.1	하나은행앞 지분 매각 ²⁾
조 흥	1999.11.12 ¹⁾	2002. 1.31			2003. 8.19	신한지주앞 지분 매각
수협신용사업	2001. 4.25		2003. 1.22 2003. 7. 9 2005.12.21	2005. 3.23 2007. 3.28 2009. 3.30		
대 투 증 권	2000. 9.25 ¹⁾	2002. 2.20			2005. 5.31	하나은행앞 지분 매각
한 투 증 권	2000. 9.25 ¹⁾	2002. 2.20			2005. 3.31	한국투자금융지주 (舊 동원지주) 앞 지분 매각
서 울 보 증	2000. 4.12 ¹⁾	2001. 6. 9	2002. 7.10 2006. 6.21	2005. 6.22 2007. 7.18 2009. 6.10		
대 한 생 명	2000. 4.12 ¹⁾	2001. 9. 5			2002.12.12	한화컨소시엄앞 지분 매각
우 리 카 드	2000.6.7 ³⁾	2000.12.30	2002. 3.25	2003. 6. 4	2004. 3.31	우리은행과 합병
우 리 종 금	2000.12.9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과 합병

주 : 1) 해당 기관, 공사, 금감위(現 금융위) 3자간 약정 체결

2) 합병은행(서울+하나)에 대하여 공사가 1대 주주의 지위(30.9%)를 유지하였으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에 따라 2002.12.1 MOU를 해지하였으며, 공사 보유지분은 2004.4.20 매각 완료

3) 舊 평화은행과 체결한 MOU임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2009년 중 금융회사별로 CEO 간담회 14회, 임원진 간담회 10회, 실무자 간담회 33회 등 총 57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장상황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MOU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 지원

2009년 중 MOU 체결 금융회사의 이행부진사항 등에 대한 상시감시 분석자료 및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현안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시장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 변화가 해당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등 총 45건을 제공하였다.

다. MOU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2008년 중 발생한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손실 등과 관련하여 MOU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과 함께 대주주로서 공사의 역할 강화 및 당초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MOU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장기성과 위주의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임원성과급, 재무지표 개선 및 MOU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장기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MOU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MOU 목표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사전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미달성 시 귀책사유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등 보다 철저한 MOU 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제5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경영관리

제1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1. 다각적 정리방식의 실행

공사는 2005년부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공사가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하여 정리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6년부터 부실금융회사 정리 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사는 가교금융회사로 계약이전 후 지분 매각, 직접적인 제3자 계약이전, 파산처리, 제2의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시장 및 지역 환경, 부실금융회사 자체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정리방식을 모색하는 등 유연한 정리전략을 활용하여 부실금융회사 정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부실금융회사 정리현황

가. 가교금융회사(예쓰상호저축은행)를 통한 전북·옴상호저축은행의 정리

금융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군산)전북상호저축은행, (제주)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2008년 12월, 2009년 8월 영업정지를 명령하였다.

공사는 가교금융회사 활용방안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북·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예금 등 부채를 가교금융회사인 예쓰상호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단축을 통한 예금자불편 경감을 도모하였다. 예쓰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3월에 설립한 가교금융회사로서, 전북·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2009년 4월, 2009년 11월 계약이전받아 영업중이며, 공사는 2010년 중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가교금융회사(예한울상호저축은행) 지분매각

공사는 투입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2009년 2월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의 지분매각을 추진하였다. 최종인수제안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5월 14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동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2009년 6월 12일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9월 23일 매수인이 금융위로부터 예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절차 등을 완료 하고, 금융위원회가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의 정리금융기관으로의 업무종료를 승인함에 따라 매각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공사는 기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592억원을 수령하고 예한울상호저축은행 지분 전량에 대한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였다.

〈표 V-1〉 2009년 중 부실금융회사 정리내역¹⁾

(단위 : 명, 개, 억원)

구 분	(군산)전북	(제주)으뜸	(전주)전일
영업정지일 (정리완료일 ²⁾)	2008.12.26 (2009.4.1)	2009.8.11 (2009.11.18)	2009.12.31 (진행중)
임직원수	27	51	118
영업점수	1	3	6
총 자산	1,115	3,220	12,497
총 수 신	1,738	5,664	13,215
자기자본	△746	△2,827	△1,583

주 : 1) 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2) 계약이전결정일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공사는 2009년 중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으뜸·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도에도 경영관리인 주도로 경영관리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안내 등을 위한 단계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공사 담당 부서장 등도 으뜸·전일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예금자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제6장 파산재단 및 보유자산의 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1. 공적자금의 회수제도 개선

가. 공사 관재인 체제의 구축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 제정) 및 「예금자보호법」(2002.12.26 개정)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을 지원한 부보금융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09년 12월 현재 전국의 240개 파산재단 중 239개 파산재단에 공사 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 선임되어 공사 주관하의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2009년에 파산선고 된 1개 파산재단의 경우에도 공사 관재인이 단독 선임되는 등 파산절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사 관재인 체제가 확고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표 VI-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체 파산재단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등 단독	공 동 ²⁾
재 단 수	240 ¹⁾	224	1	5

주 : 1) 법적종결재단(229개) 제외, 공적자금이 미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제외

2) 예금보험공사 법인(또는 직원)이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지역통합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6개 광역권별로 묶어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더욱이 관재인 1인이 수개의 재단을 맡아 관리토록 하고 이들 재단을 1개의 사무실에 통합운영토록 하였으며, 8개 거점 재단을 선정하여 인근 파산재단이 통합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로써 보조인 및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금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 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 기타 비용의 절감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1인의 관재인이 같은 재단을 장기간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근직원 및 타 지역 관재인과 정기적 순환교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파산관재인 워크숍 및 지역별 파산관재인 간담회 개최, 학습동아리 활동 등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사와 파산재단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재인 역량강화를 도모함으로써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 파산재단 실적경쟁 체제 실시

전체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 관재인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파산재단을 철저히 회수실적 중심으로 운영하고 파산관재인과 재단 보조인을 실적 우열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보조인의 채권회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있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파산재단 보조인의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 및 파산관재인 실적 평가시 공적자금 회수율, 자산정리율 및 경비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파산재단 간 공정하고 투명한 실적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성과급 지급은 물론, 실적 부진자 및 재단에 대해서는 해당 파산관재인을 교체하는 등 실적 중심의 운영체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의 채무조정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업무의 특성상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및 채무기업 재무상황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 이고 개선된 변제조건을 유도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 민원상담 도우미제도 운영

2007년 6월 공사는 파산재단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공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파산금융회사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 제도의 운영방식은 파산재단의 1차 상담 결과 수용되지 않은 건들을 공사 담당자가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파산재단의 조치와 달리 수용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해결방법을 통보하는 식이다. 만약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전화하여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여 담당자가 민원인과 전화 또는 직접면담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표 VI-2〉 민원상담 내용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구 분	채무 부존재	여신관리	채권 보전조치	채무조정	기 타	합 계
건수(건)	1	1	2	5	3	12
비중(%)	8	8	17	42	25	100

〈표 VI-3〉 민원상담 처리 결과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구 분	수 용	대안 제시*	불수용	합 계
건수(건)	1	9	2	12
비중(%)	8	75	17	100

* 파산재단과 우선 협의 안내, 신용회복지원 신청 안내, 소송을 통한 소명 안내, 케이알앤씨 협의 안내 등

바. 「파산채권 및 배당 관리시스템」 운용 활성화

공사는 파산재단의 파산채권 및 배당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파산채권 및 배당 관리시스템」 구축이 2008년 11월 완료된 이후 배당산정 기간이 3주에서 3영업일로 약 80% 단축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배당 업무에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 업무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자산환가 및 배당회수실적 제고

가. 개별자산 회수가치의 극대화

공사는 특별채권(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업체 등에 대한 여신)에 대한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2009년 중 채무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시 해당기업에 대한 재산조사와 심도있는 기업분석 및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채무조정의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초 신청조건 대비 약 19억원의 채권을 추가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사가 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파산재단이 포기하였던 특수채권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관재인 선임 이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최고장을 발송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 및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상환을 적극 유도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에 부실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 지원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은 각각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업무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의 합동공매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공사 홈페이지에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물정보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동산 수요자의 구매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한 바, 2009년 중 10회의 합동공매 실시 등을 통해 18건, 총 42억원의 매각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성원건설 주식 160만주를 장중에서 매각하여 약 114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6종목(129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파산재단이 보유한 해외 주식(네덜란드 HFIC 주식 및 인도네시아 Mobile-8 주식)도 전량 매각하여 약 31억원을 회수하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 없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파산재단별 개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공동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2009년 중 총 4회 실시)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코스틸 주식 전량(약 160만주, 2대 주주 지분)을 매각하여 약 254억원을 회수하였다.

파산재단 보유자산중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상표권, 양도담보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골프·콘도회원권 14구좌(매각가 총 4억원), 양도담보물 및 상표권 2건(매각가 총 25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3.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파산선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이러한 파산재단을 종결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최후배당 실시를 거쳐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조기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파산재단을 파산초기재단, 자산집중관리재단, 소송집중관리재단, 종결준비재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환가가 대부분 완료되고 소송이 종료된 재단을 종결준비재단으로 선정하여, 잔여자산 매각이후 최후배당을 거쳐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기종결 노력에 힘입어 2009년 12월말 현재 469개 파산재단 중 229개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도 잔여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VI-4〉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증 금	저축은행	신 협 ^{주)}	합 계
총 파산재단(A)	5	10	4	22	89	339	469
종결	종결재단(B)	-	3	1	-	3	229
	종결율(B/A)	0.0%	30.0%	25.5%	0.0%	3.4%	65.5%
진행재단(A-B)	5	7	3	22	86	117	240

주) 예금보험기금 신탁재단(2010.1.1. 신탁중앙회 이관) 14개 포함

제2절 보유자산의 관리

1. 파산재단 보유자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

공사는 기금,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보유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자산관리시스템 (FASTs)」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의 자산현황 조회·자산

평가 및 월보 등 보고서 산출이 용이해지고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체계적 파산재단 관리가 가능해져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2. 자산 인수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인수한 자산은 총 22.3조원(인수액 기준)으로서 케이알앤씨 10.3조원, 한아름종합금융 10.6조원,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3조원 등이다.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자인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금융회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인수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現 케이알앤씨)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9년 12월말까지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549억원,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은행 등 5개 인수은행으로부터 1,588억원, 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 등 5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3,550억원, 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으뜸 등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3,337억원, 파산절차 조기종결 대상 432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203억원, 한투·대투·현투증권 등 금융투자사 매각과정에서 1조 2,983억원 등 총 10조 3,210억원(인수액 기준)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표 VI-5〉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2009년도)

(2009년 1월~12월, 단위: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파산재단	1,279	34	추가 인수
	저축은행	1,446	499	전북, 으뜸

〈표 VI-6〉 정리금융기관의 자산인수(누계)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은 행	98,640	80,137	6개 은행(제일은행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보험
	금융투자	22,551	12,983	3개 금융투자사 (에버그린유동화 대물변제 유가증권 188억원)
	파산재단	55,982	3,203	421개 파산재단 (은행 5, 보험 9, 금융투자 2, 종금 20, 금고 72, 신탁 313)
	저축은행	11,888	3,337	11개 저축은행
	소 계	193,093	103,210	
한아름종금	종 금	110,225	106,262	16개 종금
한아름금고	금 고	34,831	13,467	41개 저축은행
합 계		338,149	222,939	-

3. 인수자산의 매각

공사는 인수자산의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가치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 SAMDA(Standard Asset Management and Disposition Agreement)방식*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였다.

* 부실대출의 관리와 회수를 위해 민간 회수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회수·처분을 위임하는 방식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외화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정리금융1차유동화 후순 위채의 상환으로 547억원, 한투2차유동화 잉여재원에 대한 조기 배당금 232억원(2종 출자 지분 20좌), 에버그린유동화 조기청산으로 후순위채 1,267억원을 상환 받아 회수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변제계획안에 따라 대우학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12억원, 동국무역 M&A(경남모직컨소시움이 인수)로 230억원, 대우자동차 손실보전분담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104억원을 각각 회수하였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자금 배당 157억원, 동국통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로 47억원, SK네트웍스 매각으로 148억원, S&T중공업 매각으로 34억원, 동해 펄프 매각으로 16억원, 한국증권금융 등 보유유가증권에 대한 배당으로 186억원을 각각 회수하였다.

케이알앤씨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공매를 위탁하여 2009년 말 현재까지 6,43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케이알앤씨 보유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였다.



〈표 VI-7〉 정리금융기관의 자산매각 내역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매각 PROJECT	일 자	매각액	매각처	주간사
제일은행뉴욕현지법인 지분 M&A ¹⁾	2000. 2.25	99	NARA BANK	-
대출채권 KAMCO 이관	2000. 3.20	360	자산관리공사	-
기아차 주식 장외일괄매각	2000. 9.15	1,158	Fiduciary OGF(L) Ltd	다이와증권
대출채권 KAMCO 이관	2000. 9.27	1,204	자산관리공사	-
일은증권지분 M&A	2000.11.15	1,195	리젠트그룹	한국산업은행, KPMG
제일은행 베트남현지법인 지분 M&A ¹⁾	2000.11.24	59	조흥은행	삼일회계
대출채권 원화 ABS 발행	2000.12.11	2,000	국내투자자	삼성증권, LG증권
대출채권 일괄매각(JV-SPC)	2000.12.19	2,044	론스타	삼정홀리한로키
대출채권 KAMCO 이관	2000.12.28	839	자산관리공사	-
대출채권 원화 ABS 발행	2001. 2. 5	550	국내투자자	삼성증권, LG증권
대출채권 일괄매각(RFC2001-1)	2001. 5. 7	1,505	론스타	삼일회계
대출채권 일괄매각(RFC2001-1)	2001. 6.21	1,185	메릴린치	삼일회계
대출채권 외화 ABS 발행	2001. 9.14	3,573	국내외투자자	CSFB, SG, 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출채권 일괄매각 (한아름2001-2)	2002. 2.27	1,932	GE캐피탈등 5개사	삼정KPMG
대출채권 KAMCO 이관	2002. 6.14	7,137	자산관리공사	삼일회계
담배인삼공사주식 일괄매각	2002. 9.12	1,681	한국담배인삼공사	-
대출채권 KAMCO 이관	2002.11.21	608	자산관리공사	삼정KPMG
대출채권 일괄매각 (KDIC JR Loan Sale 2003 Program)	2003.12. 9	442	Morgan Stanley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신동방 유가증권 매각	2004. 3.25	75	CJ컨소시엄	삼일회계
원화ABS 발행	2004. 3.29	2,000	국내투자자	대우증권/산업은행 컨소시엄
신호유화 유가증권 매각	2004. 9.13	153	아람파이낸셜	삼일회계
신호제지 출자전환주식 매각	2004.12.20	20	신호제지 협력업체 컨소시엄	KDB파트너스
쌍용자동차 출자전환주식 매각	2004.12.27	680	상하이자동차	삼일회계
삼양식품 출자전환주식매각	2005.10.18	90	구사주	-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매각	2005.10.31	916	국내외투자자	메릴린치외 6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	2006.12.15	1,668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씨티글로벌 & 삼성증권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및 출자전환주식매각	2007.10.11	1,459	장외매각	대우증권, Goldman Sachs
SK 네트워크	2009. 6. 4	148	장중매각	삼성증권
S&T 중공업 매각	2009. 8. 4	34	장중매각	삼성증권
동해펄프 매각	2009.11. 3	16	장중매각	삼성증권
동국통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09.12.11	47	동국통운	삼일회계, 우리투자증권

주 : 1) 예금보험공사 직접 인수분 매각

제7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제1절 부실책임추궁체계 개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위규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이를 위해 공사는 부실책임조사를 담당하는 조직(舊 조사부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두어 각각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의 유기적 연계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 舊 조사부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한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설치하여 2국 2부의 조직을 1국 1부로 축소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는 동시에 유기적 연계조사를 통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9년 7월에는 부실채무기업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적 심의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2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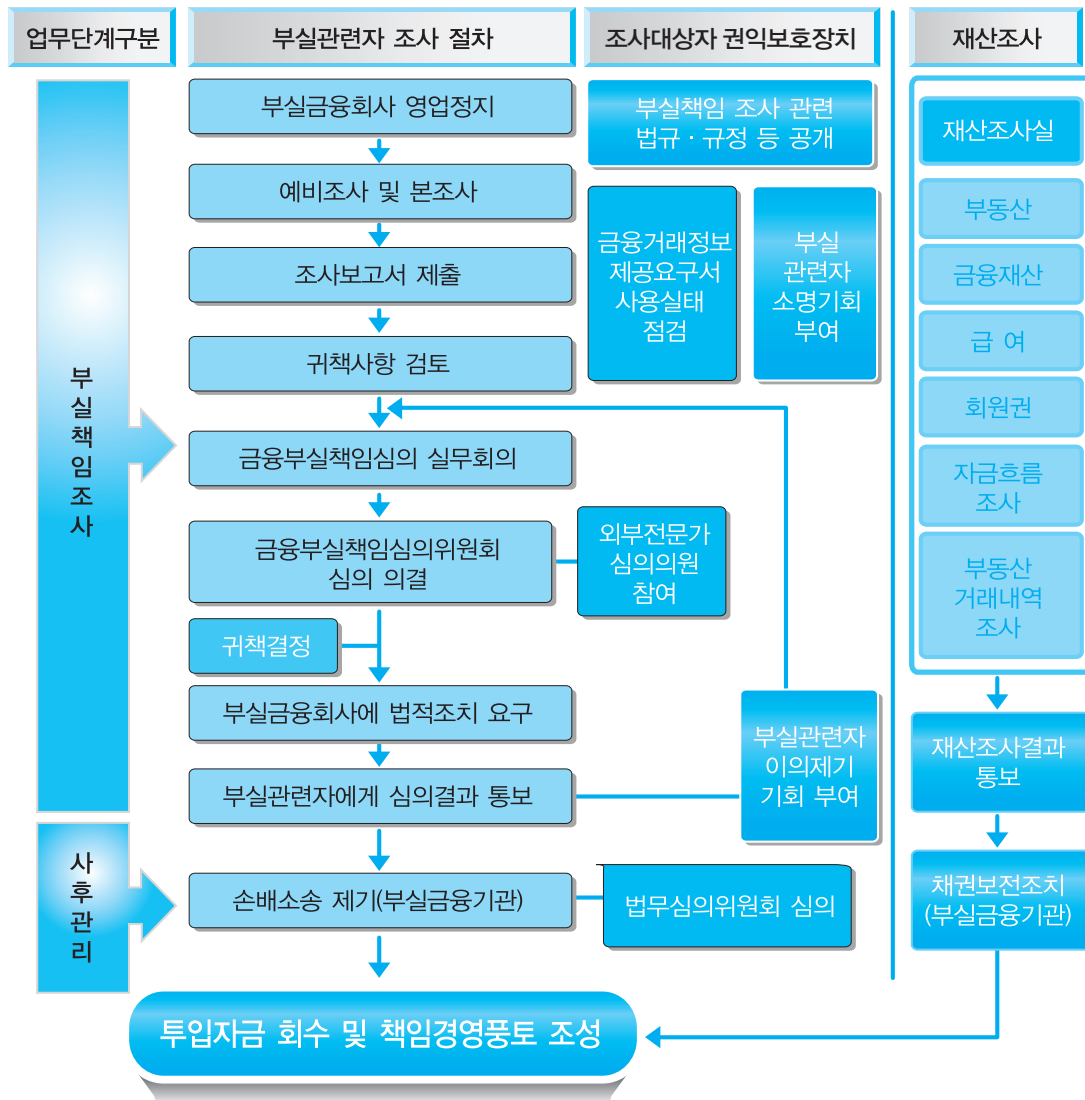
1.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과 대주주(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9년 말 현재 부실화된 15개 은행, 6개 금융투자사, 18개 보험사, 22개 증권사, 98개 상호저축은행, 339개 신탁 등 총 498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실책임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498개 회사, 5,937명에 대하여 17조 4,946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림 VII-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표 VII-1〉 부실금융회사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증권	저축	신협	계
조 사 회 사	15	6	18	22	98	339	498
부 실 관 련 자	191	65	244	159	949	4,329	5,937
손실초래금액	14,080	33,266	30,482	55,977	31,313	9,828	174,946

2.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는 1,443건 1조 9,112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VII-2〉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증권	저축	신협	계
기관수	15	6	18	22	96	325	482
피고수	191	83	275	181	1,205	7,624	9,559
청구건수	93	31	83	35	340	861	1,443
청구금액	1,004	342	2,433	3,042	6,118	6,173	19,112

한편,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법적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송업무지원을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9년 3월에는 「파산재단손배소송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손배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손배소송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3.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3,295건 1조 18억원 상당의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260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총 2,697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표 VII-3〉 부실금융회사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증권	저축	신협	계
가압류건수	37	8	90	128	1,078	1,954	3,295
가압류금액	76	48	402	1,005	5,234	3,253	10,018
가처분건수	10	1	2	42	93	112	260
회 수 금 액	102	54	204	612	918	807	2,697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71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였고,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시작하여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13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를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책임심의 결과 2009년 말 현재 830명에 대하여 14조 5,523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도록 부실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

〈표 V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부실책임조사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현장조사 기업수	부실책임	
	부실관련자	손실초래금액
832	830	145,523

2.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는 187건 9,8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회사의 법적 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부실금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실금융회사 소송담당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송 및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실금융회사를 대위하여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소가, 소송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소송에 보조 참가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보완하는 등 소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VI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기 업	피 고	청구건수	청구금액
148	1,180	187	9,800

3.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하여 975건 6,721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233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고, 2009년 말 현재 총 1,162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표 VII-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가압류		가처분	회수금액
건수	청구액	건수	
975	6,721	233	1,162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2000년 1월 21일과 2000년 12월 30일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사는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회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실관련자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와 행정기관 외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공요청권한 등을 「예금자보호법」에 추가함으로써 조사권을 강화하였다. 한편, 당초 2009.3.23에 실효예정인 「금융회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을 2011.3.23까지 연장하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918,160명에 대하여 본인명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확정판결에 의한 최종 부실관련자, 횡령·배임행위 관련 부실관련자, 시효관리채권의 소멸시효 도래자 등을 중심으로 2009년 12월말 현재 2,639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에 관한 재산조사 및 금전사해행위 관련 조사 등 특별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는 발견재산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채권보전 및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가압류 63,479건(10조 7,936억원), 가처분 1,779건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이며, 총 6,70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VII-7〉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반·특별재산조사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조사인원	가압류		가처분 건수	회수액
		건 수	금 액		
부실관련자	918,160	63,479	107,936	1,779	6,708

*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적 포함

공사는 2006년 3월 신설된 「금융회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를 통해 2009년 12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 82,845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조회하여 발견한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 1,556억원을 가압류 등 법적조치하고, 372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VII-8〉 금융거래정보조회 관련 조사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조사인원		법적조치 현황(가압류 등)	회수금액
		금 액	금 액
부실관련자	82,845	1,556	372

2. 해외 재산조사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는 미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해외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약 900여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화 305만달러를 회수하였으며, 은닉재산이 확인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현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09년에 들어서는 그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재산조사를 캐나다·일본·호주 등으로 확대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강화하여 해외은닉재산 환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활동

공사는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및 공적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37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1건, 27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2.5억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금융회사 부실발생시 해당 파산재단을 대상으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적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세청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 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상호 연동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신고센터의 홍보를 활성화 하였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LA 및 뉴욕)·캐나다(토론토) 현지 한인회 인터넷 배너광고, 현지 언론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미국 교민 홍보위원 위촉 등 입체적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 교민의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국·캐나다에 수신자 부담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를 운영 중으로 상시적으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조사기법 발굴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의 유형 및 진행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제5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1국 1부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검 인력을 포함 하여 총 9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검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부실관련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로부터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통보받아 동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9년에는 부실관련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 104억을 자진 변제 받는 등 조기에 예금보험기금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민·형사상 부실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에 기여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 회계감사 근절 등 투명한 기업회계 정착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8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제1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1. 예금자보호법 개정(2009.2.3)

가. 개정 이유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특정계정의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계정 간 대출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기반 마련

부보금융회사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차등보험료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기금적립액 목표 설정 유보 근거 마련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계정간 대출금 이자 감면 근거 마련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 특정계정의 손실규모가 클 경우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자를 감면하고, 특정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일몰기한 연장

금융회사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조회대상자를 부실 관련자와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며,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09.6.9)

가. 개정 이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예금보험 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하며, 2009.2.3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행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료율 체계를 개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기준 마련

차등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고,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며,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표기금제 보완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하며,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종금계정)에 대하여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였다.

(3) 계정간 대출금 이자 감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자보호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보호 대상예금 등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5) 해외지점의 예금등 범위 기준 마련

부보금융회사가 해외 지점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 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

(6) 계정별 보험료율 개편*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계정의 보험료 율은 인하하고, 상호저축은행계정의 보험료율은 인상하였다.

* 은행 : 0.1% → 0.08%,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0.2% → 0.15%,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 0.3% → 0.15%, 상호저축은행 : 0.3% → 0.35%

(7) 일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출연금 조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8)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폐지

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부보금융회사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9)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마련하였다.

3.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가. 특별기여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09.4.30 선고 2006헌마603, 2007헌바44 결정)

2004년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법률 제6807호)」 부칙 제6조가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2006.5.18, 2007.5.16)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특별기여금 부과 조항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 중 일부만을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점,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징수하는 점,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부보금융회사에 비하여 특별기여금 비율이 낮고 징수기간을 유예시켜 주며 1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이 특별기여금 외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타 부보금융회사도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보금융회사 사이에 차별적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부실관련자의 조사 거부 벌칙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9.9.24 선고 2007헌가15 결정)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거부한 경우 이를 법률위반으로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2007.6.27)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한정되는 점, 형벌 외에 달리 더욱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적자금 회수·책임경영 풍토 확립·국민경제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은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국내의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국내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예금보험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외부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예금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표 Ⅷ-1〉 2009년도 주요 조사연구 실적

주 제	제 목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정책 조사연구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의 정책 대응 미국 금융안정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및 주요 결과 미국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민관투자프로그램 주요 내용 영국 제2차 구제금융방안 주요 내용 일본 금융기능강화법의 주요 내용 베네룩스 3국의 금융위기 극복 현황 주요국 선제적 자본확충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해외예금보험동향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조사연구	미국 금융규제체계 개혁안 주요 내용 미국 보험업 규제개혁안 주요 내용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설립 법안 영국 금융개혁안(Turner Review) 주요 내용 EU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조사연구	미국 FDIC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 권한 미국 FDIC의 시스템리스크 시 선제적 자금지원 미국 FDIC의 보험료율체계 개편 방안 영국 특별정리제도(SRR) 적용사례 분석 IADI의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준칙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최신 동향과 조사분석 자료를 「해외예금보험 동향」, 「금융안정연구」 및 「금융리스크리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 학계, 정책당국 등에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3절 국제 교류 및 협력

공사는 2009년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공사 위상 제고 및 공사의 업무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교류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5월에 열린 IADI 아시아 지역위원회 연례회의 및 컨퍼런스에서는 「지분매각을 통한 자산회수」에 관한 주제 발표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설문회신 등을 통해 기금, 부실정리, 보험금지급 관련 제도·사례 조사 진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IADI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IADI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12월에는 「예금보험기구의 시스템 위기대응」이라는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IADI의 조사·연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IADI의 상임위원회인 연구지침위원회(RGC : Research and Guidance Committee)와 연수회의위원회(TCC : Training and Conference Committee)의 위원으로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지침보고서의 발간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신생 태국 예금보험원(Deposit Protection Agency)의 요청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 예금보험원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조달’ 관련 IADI 지침 및 한국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러시아 예금보험원(Deposit Insurance Agency)과, 12월에는 터키 예금보험기금(Savings Deposit Insurance Fund)과 양 기관의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신규체결하는 등 공사의 대외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12월에는 2주간 일정으로 공사를 방문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예금보험 위원회(Deposit Insurance Board) 간부직원들에게 예금자보호법,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현황 및 은행정리 관련 공사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될 예정인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가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제9장 2009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및 공사회계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에는 대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 의견은 '적정' 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 중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평가

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처리하며 그 변동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오류 및 회계변경에 의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손익이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당기손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지급준비금 (충당부채)을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공사운영비의 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사운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보험료 수입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동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는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다.

마.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바. 사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사.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충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기금

가. 재무 현황

2009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6조 78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710억원(19.0%) 증가하였다. 예치금 등 운용자산(4조 8,766억원)이 전년 말 대비 9,276억원 증가하였으며, 대출금 등 지원 자산(1,564억원)은 전북 및 으뜸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앞 자금 지원 등으로 126억원 증가하였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및 출연금 지급 등으로 구상채권자산(2조 9,743억원)은 전년 말 대비 4,000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대손충당금 차감 후 구상채권자산 잔액은 1,281억원 증가에 그쳤다. 계정별 자산총액은 은행계정 4조 516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2,561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2조 8,757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6,191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192억원, 상호저축은행계정 7,487억원, 신용협동조합계정 100억원이다.

부채총액은 7,53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106억원(210.1%) 증가하였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등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액이 5,188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계정별 부채총액은 저축은행계정이 3조 1,892억원(계정간 차입금 포함), 신용협동조합계정이 664억원이며, 여타 계정은 부채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총액은 5조 3,24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604억원(9.5%)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09년 중 당기순이익 4,985억원 시현에 따른 기금잉여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다. 계정별 자본총액은 은행계정 4조 515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2,561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2조 8,757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6,189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192억원, 상호저축은행계정 (-)2조 4,405억원, 신용협동조합계정 (-)564억원이다.

나. 손익 현황

2009년 중 당기순이익은 4,9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0억원(46.3%)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보험료 축소로 사업이익이 311억원 감소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준비금적립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사업외손실이 3,979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계정별 당기순이익은 은행계정 6,518억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302억원, 생명보험회사계정 3,773억원, 손해보험회사계정 916억원, 종합금융회사계정 12억원, 상호저축은행계정 (-)6,525억원, 신용협동조합계정 (-)11억원이다.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각각 1조 3,693억원 및 634억원으로 1조 3,059억원의 사업이익을 실현하였다. 사업수익은 보험료수입 1조 1,271억원(82.3%) 및 기금관리수익 2,332억원(17.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용은 공사운영비 588억원(92.7%) 및 기금관리비용 46억원(7.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은 각각 2,302억원 및 1조 376억원으로 사업외손실 8,07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은 지급준비금 순전입액 5,188억원, 대손충당금 순전입액 3,338억원에 주로 기인한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2009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5조 4,97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 1,632억원(36.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1조 1,347억원,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이 3조 684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투자자산의 경우 '09.11월 중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을 7%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 등으로 평가금액이 전년 말 대비 3조 684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7조 9,1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894억원(2.8%)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금융 지주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 부채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순자산총액은 (-)12조 4,18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 9,526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금융지주 등 보유지분의 주가상승 등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4조 1,30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손익현황

2009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8,224억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즉 기업회계기준 상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713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1조 8,686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1조 7,973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432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713억원에서 관리운영비 128억원 및 비배분비용 468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87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인건비,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8,224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432억원에서 비교환수익 8,656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입 등을 말한다.

3. 공사회계

가. 재무 현황

2009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6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억원(6.3%) 증가하였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현금과예금 등 유동자산이 18억원(11.1%), 비유동자산이 146억원(88.9%)이다. 비유동자산은 보증금 등 투자자산 115억원과 유형자산 3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총액은 16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억원(6.1%) 증가하였다. 이는 자본예산전입금 등 비유동부채(148억원)가 자본예산 소요액의 증가로 9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유동부채 16억원(9.7%)과 자본예산전입금 등 비유동부채 148억원(90.3%)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총액은 0.7억원으로 2009년 중 발생한 당기잉여금(0.3억원)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0.3억원 증가하였다.

나. 손익 현황

2009년 중 총수익 및 총비용은 각각 744.5억원과 744.2억원으로 0.3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기금전입수익 733억원(98.4%)과 예치금이자 10억원(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인건비 416억원(56.0%), 경비 303억원(40.7%)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2억원(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X-1〉 요약 대차대조표 (총괄)

당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08년 12월 31일 현재

■ 예금보험기금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37,400	31,165	유동부채	7,536	2,430
1. 운용자산	30,034	22,942	1. 지원부채	664	744
예치금	10,841	10,846	단기차입금	664	744
단기운용채권	19,193	12,096	2. 기타유동부채	6,872	1,686
2. 지원자산	1,362	1,235	지급준비금	6,871	1,683
단기대출금	2,235	2,014	기타	1	3
(대손충당금)	(-)873	(-)779	비유동부채	-	-
3. 기타유동자산	6,004	6,988	1. 지원부채	-	-
미수보험료	5,367	6,542	2. 기타비유동부채	-	-
선급보험금	-	-	부채총계	7,536	2,430
보험금가지급금	-	-			
(대손충당금)	-	-			
기타	637	446			
비유동자산	23,381	19,906	기금잉여금	53,119	48,134
1. 운용자산	18,732	16,548	(순이익:		
장기운용채권	18,732	16,548	당 기: 4,985		
2. 지원자산	202	204	전 기: 9,275)		
장기유가증권	82	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	507
장기대출금	120	120	1. 채권평가손익	126	507
3. 구상채권자산	4,373	3,092	2. 지분법자본변동	-	-
보험금구상채권	10,796	9,558	자본총계	53,245	48,641
(대손충당금)	(-)7,419	(-)6,704			
출연금구상채권	18,947	15,633			
(대손충당금)	(-)17,951	(-)15,395			
기타구상채권	-	553			
(대손충당금)	-	(-)553			
4. 기타비유동자산	74	62			
자본예산전출금	74	62			
자산총계	60,781	51,071	부채및자본총계	60,781	51,071

〈표 IX-2〉 요약 손익계산서 (총괄)

당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예금보험기금회계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634	733	사업수익	13,693	14,103
1. 공사운영비	588	592	1. 기금수익	11,337	12,028
2. 기금관리비용	46	141	보험료수입	11,271	11,911
출연금비용	-	-	출연금수입	66	117
차입금이자	35	120	2. 기금관리수익	2,332	2,073
기금직접비용	11	21	예치금이자	575	506
			유가증권이자	1,672	1,439
			대출금이자	83	127
			유가증권처분이익	2	1
사업이익	13,059	13,370	3. 기타사업수익	24	2
사업외비용	10,376	6,357	사업외수익	2,302	2,262
1. 대손충당금전입액	3,366	3,516	1. 지급준비금환입액	1,683	967
2. 지급준비금전입액	6,871	2,650	2. 파생상품평가이익	-	-
3. 지분법평가손실	111	191	3. 대손충당금환입액	28	48
4. 기타	28	-	4. 자원자산처분이익	589	1,237
당기순이익	4,985	9,275	5. 기타	2	10

〈표 IX-3〉 요약 재정상태표 (총괄)

당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08년 12월 31일 현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17,450	6,103	유동부채	77,639	68,004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952	1,305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75,497	66,259
2. 단기금융상품	13,267	3,349	2. 기타유동부채	2,142	1,745
3. 단기투자증권	3,093	1,199			
4. 미수채권	11,093	11,062	장기차입부채	201,160	218,444
(대손충당금)	(-)11,028	(-)11,027	1. 공채	197,657	213,414
5. 단기대여금	73	70	2. 장기차입금	3,503	5,030
6. 기타유동자산	-	145			
			장기충당부채	201	608
투자자산	134,737	104,053	1. 기타장기충당부채	201	608
1. 장기대여금	167,098	175,858			
(대손충당금)	(-)135,557	(-)142,920	기타비유동부채	162	-
2. 장기투자증권	103,196	71,044	1. 기타비유동부채	162	-
3. 기타투자자산	-	71			
			부채총계	279,162	287,056
기타비유동자산	2,786	3,185			
1. 장기미수채권	134	137	순자산		
(대손충당금)	(-)129	(-)131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기타의비유동자산	2,781	3,179	2. 적립금및잉여금	(-)678,142	(-)686,366
			3. 순자산조정	30,889	(-)10,413
			순자산계	(-)124,189	(-)173,715
자산총계	154,973	113,341	부채및순자산총계	154,973	113,341

〈표 IX-4〉 요약 재정운영표 (총괄)

당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8,686	17,973	713
1. 금융정책지원	18,686	17,973	713
보험비용	38	-	
인건비	21	-	
경비	79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2,490	-	
대손상각비	652	-	
공채이자비용	14,728	-	
국내차입금이자비용	273	-	
투자증권감액손실	405	-	
기타이자수익	-	25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6,566	
충당부채환입	-	407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	1,428	
잡이익	-	312	
대손충당금환입	-	9,046	
배당금수익	-	181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	8	
II. 관리운영비			128
1. 인건비			86
2. 경비			42
III. 비배분비용			468
1. 지급수수료			1
2. 평가손실			346
3. 기타비용			121
IV. 비배분수익			877
1. 이자수익			372
2. 평가이익			346
3. 기타수익			15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32
VI. 비교환수익			8,656
1. 부담금수익			8,656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224

〈표 IX-5〉 요약 대차대조표

당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08년 12월 31일 현재

■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1,828	1,713	유동부채	1,585	1,608
1. 현금과예금	1,464	1,608	1. 미지급금	2	-
2. 미 수 금	134	-	2. 미지급비용	456	460
3. 선 급 금	182	72	3. 예 수 금	1,127	1,148
4. 미수수익	5	25			
5. 선급비용	43	8			
비유동자산	14,607	13,753	비유동부채	14,777	13,819
1. 투자자산	11,456	11,383	1. 자본예산전입금	14,777	13,819
보증금	9,852	9,795	2. 퇴직급여충당금	7,567	19,589
장기유가증권	-	-	(국민연금전환금)	(-)3	(-)5
기타투자자산	1,604	1,588	(퇴직보험예치금)	(-)7,564	(-)19,584
2. 유형자산	3,151	2,370	부채총계	16,363	15,427
임차부동산시설물	552	552	1. 이익잉여금	73	39
차량운반구	-	-	(당기잉여금 또는 결손금)		
기타유형자산	15,404	13,508	당 기: 34		
(감가상각누계액)	(-)12,805	(-)11,690	전 기: (-)475		
자산총계	16,435	15,466	자본총계	73	39
			부채및자본총계	16,435	15,466

〈표 IX-6〉 요약 손익계산서

당기 :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1. 인건비	41,641	41,264	1. 기금전입수익	73,301	74,217
2. 경 비	30,319	30,133	2. 예치금이자	961	1,343
3. 총당금전입액	2,224	3,856	3. 유가증권이자	-	-
4. 기타비용	239	1,049	4. 기타수익	195	267
5. 법인세비용	-	-			
비용총계	74,423	76,302			
당기잉여금	34	(-)475	수익총계	74,457	75,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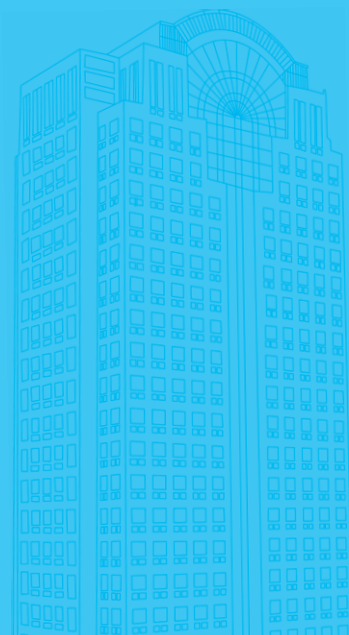
KDIC

부록

1.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2. 2009년도 주요 일지

3. 통 계



130 | 예금보험공사

2. 2009년도 주요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3월 3~5일	신한금융지주 신주인수권증서 매각(131억원 회수)
3월 11일	예한울상호저축은행 매각 공고
3월 18일	금융위원회, 예쓰상호저축은행 설립 승인
3월 19일	예쓰상호저축은행 설립
3월 25일	전북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40억원)
3월 31일	신한금융지주 2008년도 상환우선주 배당금 136억원 수령
4월 1일	금융위원회,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쓰상호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로의 계약이전 결정
4월 1일	전북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연(799억원)
5월 14일	예한울상호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12일	SK네트웍스, 동양메이저, STX팬오션, 아이드림, 동해펄프 등 케이알앤씨 보유주식 매각으로 161억원 회수
6월 12일	예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6월 25일	현대택배 매각으로 185억원 회수
6월 26일	하이닉스소송 출연금 정산으로 251억원 회수
7월 6일	현투증권 CBO후순위채권 원리금 1,288억원 상환 회수
7월 20일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1,876억원 회수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전북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8월 11일	금융위원회, 으뜸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8월 19일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금 1,685억원 및 배당금 43억원 회수
11월 10일	정리금융공사, 페이퍼컴퍼니인 케이알앤씨로 전환
11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100억원)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쓰상호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로의 계약이전결정
11월 18일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관련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연(2,490억원)
11월 24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7% 매각으로 8,660억원 회수
12월 1일	현투SPC 청산으로 1,640억원 회수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3. 통 계

가. 부보금융회사¹⁾

(단위 : 개)

금 융 권	2003 말	2004 말	2005 말	2006 말	2007 말	2008 말	2009 말
은 행	58	55	56	53	53	55	54
(국 내)	(18)	(18)	(18)	(17)	(17)	(17)	(17)
(외국계)	(40)	(37)	(38)	(36)	(36)	(38)	(37)
(기 타) ²⁾	-	-	-	-	-	-	-
금융투자사 ³⁾	58	56	53	53	53	60	115
보험사	43	43	42	43	44	43	43
(생명보험)	(23)	(23)	(22)	(22)	(22)	(22)	(22)
(손해보험)	(20)	(20)	(20)	(21)	(22)	(21)	(21)
종합금융회사	2	2	2	2	2	2	2
상호저축은행	114	113	111	110	109	106	106
신용협동조합 ⁴⁾	1,086	-	-	-	-	-	-
합 계	1,361	269	264	261	261	266	320

주 : 1) 부보금융회사수는 영업개시일에서 인 · 허가 취소일 또는 해 · 파산 기준임

2) 신용사업 영위 단위수협으로서 2003년 1월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됨

3) 2009.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09.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4)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됨

나. 금융권별 부보예금¹⁾

(말잔기준, 단위 : 십억원, %)

금 융 권	2008 말(B)	2009 말(B)	증감(B-A)(증감률)
은 행	569,726	632,776	63,050 (11.1)
금융투자사	15,354	18,786	3,432 (22.4)
보험사	267,820	293,571	25,751 (9.6)
(생명보험)	(227,901)	(248,105)	20,204 (8.9)
(손해보험)	(39,919)	(45,466)	5,547 (13.9)
종합금융회사	950	2,057	1,107 (116.5)
상호저축은행	59,794	72,929	13,135 (22.0)
합 계	913,644	1,020,119	106,475 (11.7)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타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

다. 상환기금 수입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199801 ^전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4,775	4,956	4,871	4,987	5,027	4,976	5,965	35,557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	168	145	151	156	185	169	1,130
보 험 사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074	1,176	1,288	1,402	1,543	1,683	1,782	9,947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889)	(978)	(1,069)	(1,160)	(1,265)	(1,364)	(1,430)	(8,155)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185)	(198)	(219)	(242)	(278)	(319)	(352)	(1,792)
종합금융회사	980	336	233	139	130	1,818	20	6	5	6	7	8	10	62
상호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222	264	319	370	430	491	593	2,689
신용협동조합	402	162	281	407	641	1,893	-	-	-	216	116	129	137	598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6,247	6,570	6,628	7,133	7,280	7,472	8,656	49,986

주 : 1) 1998년 보험료 수입은 1998년초 기금통합 체제 정비 후 해체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 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것을 포함

2)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34,717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088
보 험 사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28,734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3,568)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5,166)
종합금융회사	73	17	15	19	22	24	29	199
상호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8,076
신용협동조합	603	4	-	-	-	-	-	607
합 계	9,545	9,513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74,421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사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회사	65,120	-	12,600	73,342	-	151,062
상호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2	-	65,726
신용협동조합	2,769	8,179	-	2,028	-	12,976
합 계	210,150	224,850	89,407	310,593	36,600	871,600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¹⁾
은 행	222,039	139,093	-	100,064	-	461,196
금융투자	80,769	4,060	113	21,239	-	106,181
보 험 사	159,198	31,191	-	3,495	-	193,884
(생명보험)	(56,697)	(27,518)	-	(3,495)	-	(87,709)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회사	27,052	7,431	182,718	-	12,917	230,118
상호저축은행	101	4,157	72,892	-	8,532	85,683
신용협동조합	-	-	47,402	-	367	47,769
합 계	489,158	185,932	303,125	124,799	21,817	1,124,831

주 : 1) 통합 예금보험공사 출범이전 지원된 1조 6,069억원을 포함한 합계임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청솔종합금융회사	121
	하나로증권	24,912
	한스, 한국, 중앙증권	1,5
	영남증권	1,717
	신충북상호신용금고	100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38,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3,003
	케이알앤씨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489,158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432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57
	대한화재	509
	우리(舊 하나로)증권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5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646
	소 계	185,932

구 분			지원금액
보험금 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금융투자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6
		영남, 한솔, 한국종금	1
	정리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5
자산 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산업은행	13,000
		중소기업은행	6,000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 등)	8,570
	케이알앤씨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은행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대 출	종합금융회사(14개)	12,917	
	상호신용금고(19개)	8,532	
	신용협동조합(39개)	367	
	소 계	21,817	
총 계			1,124,831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사	-	-	-	-	-	-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상호저축은행	866	19,095	11,412	-	3,963	35,336
신용협동조합	-	-	2,176	-	-	2,176
합 계	866	19,095	13,588	-	3,963	37,512

자. 상환기금 지원자금 연도별 회수 실적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14,428
2001	41,776
2002	31,424
2003	55,138
2004	55,157 ¹⁾
2005	35,317
2006	32,414
2007	43,397
2008	23,755
2009	26,002
누 계 ¹⁾	458,806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포함

자. 상환기금 지원자금 형태별 회수 실적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대출금직접회수	자산매각 ²⁾	합 계
은행	144,507	687	17,964	-	55,178	218,335
금융투자	12,121	3,207	74	-	12,539	27,943
보험사	25,924	884	4,114	-	2,197	33,119
종합금융회사	998	59	79,347	10,462	-	90,867
상호저축은행	-	334	48,164	6,122	-	54,620
신용협동조합	-	4	33,565	355	-	33,924
합 계	183,549	5,176	183,227	16,939	69,914	458,806

주 : 1)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재원을 회수한 자금 포함

2)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자금을 회수한 자금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09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 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9	169	196	564	929	44,9	147	1,287
· 증 금	30	22	7	-	29	96,7	1	2
· 증 권	36	5	8	3	16	44,4	27	47
· 보 험	50	10	6	6	22	44,0	25	53
· 자 산 운 용	31	6	8	-	14	45,2	50	67
· 저 축 은 행	231	113	28	1	142	61,5	17	106
· 신 협	1,666	2	137	553	692	41,5	14	988
· 리 스	25	11	2	1	14	56,0	13	24
합 계	2,102	174	207	564	945	45,0	148	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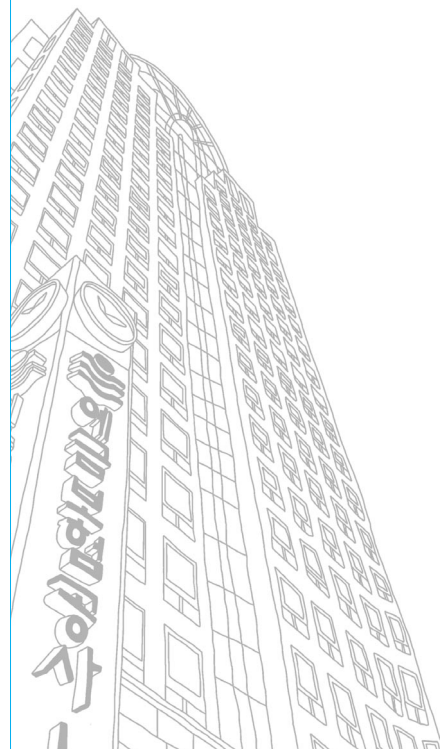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09.8월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 ~ 2009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용 권	· 증 금	2,7	0,7	18,3	-	1,0	22,8
	·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 보 험	15,9	3,1	-	0,3	1,8	21,2
	· 신 협	-	-	4,7	0,3	-	5,0
	·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자료 : 금융위원회



2009 연차보고서

2009 Annual Repor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행인_ 이 승 우

편집인_ 임 성 열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